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강희 연간 성경의 내무부 상인 제도 도입과 전개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허 가 람

강희 연간 성경의
내무부 상인 제도 도입과 전개

지도교수 구 범 진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허 가 람

허가람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_____ 이은정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박수철 _____ (인)

위 원 _____ 구범진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강희 연간 성경에 도입된 내무부 상인 제도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청대 내무부 상인의 신분과 활동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내무부 상인은 '황제의 家僕'인 '上三旗 보오이'의 일원으로, 내무부에 소속되어 각종 상업 활동을 위탁받아 수행한 사람을 일컫는다. 長蘆鹽의 운반·판매와 洋銅의 조달과 같은 국가적인 경제 활동에 대대로 종사한 范氏 일가의 사례가 내무부 상인의 대표로서 널리 연구되어온 반면, 내무부 상인의 전체상을 보여주는 연구는 드물다. 최근에는 내무부 당안의 활용이 진척되면서 강희 연간 북경과 성경에 총 수백 명에 달하는 내무부 상인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내무부 상인이 내무부 전체 구성원 중에서도 상당한 수를 점하는 군체였다면, 이들 군체에 대한 성격 규명이 새로 필요하다. 본고는 근년에 간행된 성경 내무부 당안인 『黑圖檔』 중 '상인 제도 도입과 상인 관리'에 관한 문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성경의 내무부 상인의 신분과 성격, 그 활동상을 밝혀내었다.

순치 원년(1644)의 入關 직후, 盛京에 있었던 내무부는 북경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전히 황실의 수요에 따라 매년 생산물을 납부하는 황실 소유의 莊園과 果園들이 있었다. 인삼, 貂皮 등 만주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도 관리되어야 할 황실의 재산이었다. 이에 순치 연간부터 강희 초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내무를 관장하기 위한 각종 직관이 신·증설되었다. 강희 6년(1677)과 9년, 두 차례에 걸친 성경 內庫(후의 廣儲司) 관원의 '상인 신설 청원'은 이처럼 성경 내무 기구가 확충되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강희 10년과 강희 23년, 두 차례에 걸쳐 선발한 성경의 내무부 상인은 모두 내고의 구성원이었다. 내고 관원이나 내고 관할 莊園 莊頭의 근친으로, 상인으로 선발되기 전 이들은 실, 버섯, 목이, 蕨菜 납부 등 잡다한 '차역(alban)'을 수행하고 있었다. 상인으로 선발된 후 내고 물자 매각과 本銀 운용의 의무를 맡게 되었다. 그 대가로 상인 본인을 포함하여 세 명 장정 몫의 기존 차역을 면제받았다.

상인으로서 각기 수령한 100냥에서 300냥의 내고의 本銀은 '대출은'과 성격이 크게 달랐다.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대출과 달리, 내무부 상인들은 革退되기 전까지 본은의 운용을 그만둘 수 없었다. 상인들이 본은을 운용하여 매년 납부한 息銀 수입은 대출한 내고은에 대한 이자 수입과 별도의 항목으로 계산되었다. 즉, 息銀 납부는 기존 차역을 면제받은 대신 새로이 부과된 일종의 '차역'에 다름없었다.

한번 상인이 되면 노환이나 가세 몰락으로 본은 운용이 어렵게 되더라고 승계자를 찾기 전까지는 그만둘 수 없었다. 따라서 상인이 증원된 강희 23년 이래로 강희 말년에 이르기까지 33인의 商人缺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상인은 친족 계승이 원칙이었으나 형제나 자손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다른 佐領下人이 승계할 수 있었다. 이는 내무부 속하 장원의 장두결 승계 원리와 유사하다. 또, 평생 다른 직무로 바꾸거나 관원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다른 차역을 수행하는 대다수의 내무부 구성원들과 다르지 않았다. 차역 수행을 독책하는 관원도 따로 두어졌다. 따라서 내무부 상인은 다른 내무부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차역으로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alban i hūdai niyalma)'이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성경의 내무부 상인이 매년 납부하는 息銀은 내고 총수입의 60%에 달하였다. 그 때문에 내무부 상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성경 내고의 存銀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축적된 은을 활용하기 위해, 강희 39년(1700) 성경 內庫銀의 대출 제도가 도입되었다. 상인들은 내고은을 대출받아 상인으로서 운용하는 본은 및 개인 자산과 함께 상업 자본으로 삼았다. 매년 소정의 息銀을 납부하기 위해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은 다양한 상업 활동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주로 2, 3명이 패를 이루어 合資 경영하는 방식으로 수익 증대를 꾀했다. 비단 성경 지역 내에서의 상업 활동뿐만 아니라, 기린 울라 및 조선과의 출변 교역에도 종사하였다.

주요어 : 허투당(黑圖檔), 성경(盛京), 내무부(內務府), 황상(皇商), 보오이(booi), 차역(alban)
학 번 : 2018-21943

목 차

서론 ····· 1

Ⅰ. 성경의 내무부 상인 제도 도입 ····· 8

Ⅱ. 내무부 상인의 의무와 출신 ····· 17

Ⅲ. 내무부 상인의 관리와 승계 ····· 29
1. 내무부 상인의 증원과 관리 ····· 29
2. 내무부 '상인결'의 승계 방식 ····· 36

Ⅳ. 내무부 상인의 활동과 재정 기여 ····· 43
1. 내무부 상인의 상업 활동 ····· 43
2. 내무부 상인의 內庫 재정 기여 ····· 52

결론 ····· 59

참고문헌 ····· 61
부록 ····· 67
Abstract ····· 70

표 목 차

[표 1] 강희 초년의 성경 內三旗 편제: 인적 관리 체제 ···· 11
[표 2] 순치 10년(1653)-강희 5년(1666)의 직관 증설 ····· 14
[표 3] 강희 10년(1671) 정월 1차 상인 지원자의 신원 ····· 25
[표 4] 강희 11년(1672)-57년(1718)의 息銀 수입 내역 ····· 37

그 림 목 차

[그림 1] 내무부 상인 제도 도입 논의 과정 ····· 17
[그림 2] 강희 11년(1672)-33년(1694) 내무부 상인의 內庫 재정 기여도 ····· 54
[그림 3] 강희 6년-33년 성경 內庫 存銀의 변동 양상 ····· 55

서 론

淸代 內務府는 궁중의 모든 사무와 황실 재정을 총관하는 기구로, 內·外政의 전체 기구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어느 왕조건 황제의 '집안일[家事]'을 담당하는 내무 기구는 있기 마련이었지만, 청대 내무부는 이전 왕조들과 다르게 운영되었다. 내무를 수행하는 인원 대다수가 환관이 아닌 '上三旗 보오이(booi)'였기 때문이다.[1] '집안의'라는 말뜻 그대로 家僕 신분이었던 '보오이'들은, 국가의 각종 役을 수행하는 公民인 일반 기인들과 달리 대대로 자신의 주인[ejen]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그중에서도 황제의 직속기인 양황기, 정황기, 정백기에 편제된 '상삼기 보오이'들은 황제의 노복으로서 입관 전부터 황제의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왔다.[2] 淸朝가 '국가 재정'과 '황실 재정'의 분리를 표방한 이상, 황제의 곳간을 채우는 일은 그대로 이들의 몫이 되었다. '상삼기 보오이'의 상당수가 내무부 소속 莊園과 果園, 그리고 각종 戶[3]에 각각 편

---

* 이 연구는 포니정재단의 인문연구장학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이 연구에서 활용한 만문 자료의 전사와 번역은 아래의 원칙에 따랐다.
  (1) 원문의 로마자 전사는 묄렌도르프식 표기에 따랐다.
  (2) 원문의 擡頭와 空擡는 전사문과 번역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3) 한국어 번역은 최대한 의미를 살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따라서 원문의 뜻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사와 접속사를 첨가하거나 문장을 새로이 나누었다.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재량으로 원문에 없는 添辭를 대괄호 안에 적었다. 특정 단어나 어구에 대한 부연 설명은 소괄호로 처리하였다.
  (4) 번역문에서 만주식 이름은 소리 나는 대로 옮기고 중국식과 조선식 이름은 본래 한자음을 추정하여 우리말 한자음으로 옮겼다. 좌령의 이름은 『八旗通志』과 『盛京通志』에 실린 인명과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1) 明末 환관의 전횡으로 인한 폐단을 절감한 淸朝는 환관 기구를 대폭 삭감하고 입관 전부터 한(Han)의 집안일을 수행해온 보오이 조직으로 내무 기구를 꾸렸다(祁美琴, 『淸代內務府』, 遼寧民族出版社, 2009, p.37 참조).

2) '상삼기 보오이'는 각각 세 구사(gūsa, 旗)의 하위 단위인 니루(niru, 佐領)과 혼토호(hontoho, 管領)에 편제되었고, 그 장관인 니루 장긴(niru janggin, 佐領)과 보오이 다(booi da, 包衣大/管領)가 관리하였다. 조직명과 장관 명칭의 한문 표기가 동일하여 초래되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명은 각각 '니루'와 '혼토호'로, 장관 명칭은 각각 '좌령(佐領)'과 '관령(管領)'으로 표기하겠다. 일반적으로 좌령이 관할하는 사람들을 佐領下人, 관령이 관할하는 사람들을 管領下人이라 한다.

3) 내무부에 소속된 각종 戶는 물고기잡이, 꿀 채취 등 동일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성되어 황실에서 사용할 물품을 생산하고 공급하였다. ‘상삼기 보오이’의 내원은 복잡하지만,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비교적 지위가 낮은 보오이들은 다양한 경로로 유입된 요동 지역과 산동, 하북, 산서 등 그 인근 지역의 漢人 출신이 많았다.[4]

내무부 소속 재정 기구인 廣儲司의 六庫에는 이들이 매년 납부하는 인삼, 모피, 東珠 등의 특산품과 각종 직물, 菜果, 고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차곡차곡 쌓여 갔다. 황실의 소용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에 內庫에 축적된 잉여 물자를 매각하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두어진 사람들이 바로 내무부 상인, 즉 ‘皇商’이었다.

황실과 상인, 다시 말해 상인을 통한 황실의 경제 활동은 퍽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황상’에 관해서는 이들이 종사한 다양한 경제 활동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왔다. 주요 연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내고 물자 중에서도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었던 인삼의 채취와 매각에 관한 연구가 있다.[5] 만주 지역에서 나는 貂皮, 東珠, 인삼 등 자연자원의 교역에 기대어 발흥한 청조는 입관 후에도 인삼을 독점하고 그 수입을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그 일환책으로 康熙 53년(1714)부터는 王修德(이하 王修德의 一族을 王氏 일가로 약칭)[6]을 비롯한 ‘황상’들

장정들로 구성된 인적 관리 단위이자 납세 단위로, 장원과 유사한 성격을 띠었다(任玉雪,「試析盛京內務府戶口(1644-1796)」,『淸史硏究』, 2003(2), p.20 참조).

4) 任玉雪, 위의 글, pp.17-20; 李小雪,「順康年間盛京上三旗包衣佐領所屬糧莊群體的組織與管理」,『淸史硏究」, 2019(2), pp.53-56; 王天馳,「康熙朝『黑圖檔』から見た盛京地方の內務府包衣」, 史學硏究會, 2020.7, pp.91-92.

5) 인삼 채취와 매각은 Van Jay Symons, Ch’ing ginseng management: Ch’ing monopolies in microcosm, Tempe, Ariz.: Center for Asian Studies, Arizona State University, 1981; 王佩環,「淸代東北採蔘業的興衰」,『社會科學戰』, 1982(4); 佟永功,「淸代盛京參務活動術略」,『淸史硏究』, 2000(1); 趙郁楠,「淸代雍正朝東北蔘莊及採蔘管理特點」,『滿族硏究』, 2008(3); 祁美琴, 앞의 책; 滕德永,「乾隆朝內務府對庫存蔘斤的管理:《蔘斤變價》爲考察對象」,『故宮博物院院刊』, 2011(4); 孫曉瑩,「淸代前期にあける人蔘採取制度と內務府商人」,『內陸アシア史硏究』29, 2014(a); 김선민,「17-18세기 청대 인삼정책의 변화」,『중국학보』74, 2015 참조.

6) 孫曉瑩은 『內務府奏案』과 『內務府奏銷檔』에 근거하여 강희 53년에 인삼 채취를 청부받은 상인 ‘王修德’이 長蘆鹽 경영으로 널리 알려진 ‘황상’ 王惠民 부자와 친족 관계임을 밝혀내었다. 본문의 王氏 일가는 곧 王惠民의 일족을 의미함을 밝혀 둔다(孫曉瑩, 앞의 글, p.95 참조).

에게 인삼 채취와 납부를 위탁하였다.[7] 내고에 축적된 인삼 잉여분의 매각도 '황상'들에게 맡겨졌다. 崇文門 稅關과 강남의 三織造處와 같이 전국의 물자와 대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에서 范毓𩟗 부자(이하 范毓𩟗의 一族을 范氏 일가로 약칭)와 王氏 일가를 위시한 '황상'들이 인삼을 매각하고 은량을 내고에 납부하였다.

한편, '황상'은 내고 물자 매각만 담당한 것이 아니었다. 동전 주조에 필요한 구리의 공급 및 소금의 운반과 판매도 위탁받았다. 과거 내무부의 鹽政 개입은 황실의 致富를 위해 '국가 재정 자원'에 침투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8] 그러나 구리와 소금은 국가 화폐 경제를 원활히 운용하고 사람들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자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필수 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황상'의 역량을 활용하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9] 청 전기에는 아직 雲南을 비롯한 境內의 구리 광산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동전 주조에 필요한 구리를 일본에서 수입하여야 했다. 강희 38년(1699) 이후 '황상'들은 내고에 은량을 납부하고 辦銅權을 얻어 일본 구리[洋銅]를 조달하기 시작했다. 이중 范氏 일가는 건륭 연간에 이르기까지 수 척의 선박을 운용하며 구리 조달에 크게 일조하였다.[10] 王氏 일가와 范氏 일가는 옹정 연간부터 기존 鹽商의 체납 은을 대신 상환하는 조건으로 引地를 인계하여 長蘆鹽의 운송·판매업에도 뛰어들었다. 건륭 연간에 들어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체납 은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청조는 내고은을 대출해주면서까지 이들에게 계속 염업 경영을 위탁하였다.[11]

---

7) 인삼 채취를 상인에게 위탁하는 방침은 그 폐해로 옹정 원년에 중단되었다가 옹정 8년에 재개되어 건륭 9년까지 실시되었다. 옹정·건륭 연간에는 '황상' 范氏 일가의 활약으로 인삼 채집량이 크게 증가하였다(王佩環, 앞의 글, p.190 참조).

8) 祁美琴, 앞의 책, p.112.

9) 孫曉瑩,「清代前期における內務府商人の研究」, 早稻田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b), p.135.

10) 辦銅에 대해서는 韋慶遠·吳奇衍,「清代著名皇商范氏的興衰」,『歷史研究』, 1981(3); 劉序楓,「清日貿易の洋銅商について-乾隆～咸豐期の官商·民商を中心に」,『九州大學東洋史論集』15, 1986; 松浦章,「清代對日貿易にあける官商·民商」,『清代海外貿易史の研究』, 朋友書店, 2002; 王萌, 「康熙朝後期的銅政改革與內務府官商」,『清史研究』, 2010(1); 孫曉瑩,「康熙朝內務府商人と日本銅」,『東アシア文化環流』3(2), 2010.11; Hailian Chen, *Zinc for Coin and Brass: Bureaucrats, Merchants, Artisans, and Mining Laborers in Qing China, ca. 1683-1830s*, Leiden; Boston:Brill, 2019 참조.

이처럼 청 전기 내내 각종 경제 활동에서 范氏 일가와 王氏 일가가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황상' 연구는 이들 일족의 사례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范氏 일가의 경우, 족보와 비문이 발굴되어 장장 12대에 걸친 가계와 활동상이 복원되었다.[12] 이 같은 연구 경향으로 그동안 范氏 일가는 '황상'의 대표 격으로 비쳐왔다. 范氏 일가는 산서 상인 출신으로 명 말기부터 張家口에서 변경 무역에 종사해왔다. 순치 연간에 청 황실은 모피, 군량 등 필요한 물자를 조달시키려 변경 지역에서 활동하던 상인들을 불러들였다. 그중 하나가 바로 范氏 일가였다. 애당초 상업 능력을 인정받아 내무부에 입적한 이들은 상술한 염업 경영, 구리 조달 등 국가적 대사업에 대대로 종사하였다. 사업 경영을 위해 막대한 내고은을 지원받았던 이들의 자산은 건륭 연간 기준으로 무려 1백만 냥에 달하였다.[13] 그러므로 '황상'은 '황제의 주머니'에서 막대한 은량을 대출받아 국가적 경제 활동에 종사해온 특권 대상인이었다는 것이 그간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14] 기존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오던 '황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황제와의 관계를 부각한 용어이다.

일부 저명한 '황상' 가문에 관한 연구 성취와 달리, '황상'의 전체상을 조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근년에는 당안의 개방과 출판으로 자료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내무부 당안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무부 상인의 개념과 전체 규모, 관리 방식을 비롯한 전체상을

---

11) 鹽業 경영에 대해서는 韋慶遠·吳奇衍, 앞의 글; 林永匡·王熹,「清代長蘆鹽商與內務府」,『古宮博物院院刊』, 1986(2); 李克毅,「清代鹽商與帑銀」,『中國社會經濟史研究』, 1989(2); 吳海波·李曦,「清代鹽商與官僚資本述略」,『湖南工程學院學報』, 2006(2); 賴惠敏, 『乾隆皇帝的荷包』,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14; 孫曉瑩, 앞의 글 참조.

12) 范氏 일가에 대한 사례 연구는 松浦章,「山西商人范毓馥一族の系譜と事蹟」,『史泉』52, 1978; 松浦章,「山西商人范氏經濟の資産狀況」,『清代海外貿易史の研究』, 朋友書店, 2002; 韋慶遠·吳奇衍, 앞의 글; 張正明·張舒,「從《范氏家譜》看山西介休范氏家族」, 張正明·孫麗萍·白雷 編,『中國晋商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06; 王景麗,「清前期內務府皇商范氏的商業活動探析」,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華立,「清代洋銅官商范氏一族の軌跡」,『大阪經濟法科大學論集』100, 2011 참조; 賴惠敏, 앞의 책 참조.

13) 賴惠敏, 앞의 책, p.185.

14) 더욱이 내무부에 입적한 후 3대, 4대째에 이르러서는 范氏 일가 상당수가 관직에 올라, 정·경계에서 모두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이 중에는 '太僕寺卿', '布政司參政', '廣東提督' 등의 고관이 된 사람도 있었다(韋慶遠·吳奇衍. 앞의 글, p.124).

규명하는 연구가 나왔다. 孫曉瑩의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15] 우선, '황상'에 대한 인식부터 교정할 필요가 있다. 孫曉瑩은 그간 내무부 상인이 국가적 규모의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대상인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사료의 불균형이 빚어낸 편향이라고 주장하였다. 강희 연간의 내무부 당안에 등장하는 수백 명의 내무부 상인들은 대다수가 일상적인 내고 물자의 매매에 종사하던 소상인이었다. 소규모 매매 활동에 종사한 이들이 그간 '황상' 연구에 활용되어온 지방지, 실록, 통전 등의 편찬 사료에 조금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던 것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范氏 일가와 王氏 일가는 이러한 내무부 상인 중에서도 '돌출된 존재'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수백 명에 달하였던 당안 속의 내무부 상인들은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 일찍이 吳奇衍은 『內務府奏銷檔』에 실린 옹정 13년(1735)의 '廣儲司 賣買人 명단'에 근거하여 내무부 상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황상'은 廣儲司, 掌儀司 등 내무부의 각 기구에 배치되어 유관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佐·管領下人으로, 모두 내고에서 소정의 本銀을 수령하고 매년 息銀을 납부하였다. 수령한 本銀의 액수에 따라 1등, 2등, 3등 상인으로 나뉘었다. 이중 대다수가 중소 상인인 2등, 3등 상인이었다고 밝혀내었다.[16] 한편, 孫曉瑩은 내무부 상인을 크게 '세관 상인'과 '상삼기 보오이 상인'으로 구분 지었다. 淸初 내무부가 張家口, 崇文門 등의 稅關으로 招募한 范氏 일가를 비롯한 산서 상인들을 '세관 상인'이라고 명명하였다. 내무부 상인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상삼기 보오이 상인'은 내무부의 삼기 좌령이 관할하는 부유한 집안에서 선발된 장정으로 吳奇衍이 말한 '황상'이 곧 이들을 가리킨다.[17] 초모된 세관 상인이건 상삼기 보오이 상인이건 이들은 모두 내고은을 수령하고 매년 이에 상응하는 息銀을 납부하였다. 즉, 제 Ⅱ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내무부의 어떤 기구에 소속되어 어떤 상업 활동에 종사하든 내고은을 수령한다는 것이 바로 '내무부 상인'으로서의 신분을 규정하는 필요조건이었다.

---

15) 孫曉瑩 2014(b), 앞의 글; 孫曉瑩,「簡論淸代北京內三旗所屬內務府商人」,『靑華大學學報』35, 2020(1).

16) 吳奇衍, 「簡論淸前期內務府皇商的興起-淸代內務府皇商經濟專題硏究之-」, 葉顯恩,『淸代區域社會經濟硏究』, 中華書局, 1992, p.776.

17) 孫曉瑩 2014(b), 앞의 글, pp.21-26.

이처럼 내무부 상인의 대다수가 일상적인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비교적 낮은 신분의 중소 상인이었다면, '황상'이라는 표현은 이들을 가리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감이 있다. '황상'의 용례는 당안이나 관찬 사료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주로 민간 사료에서 발견된다. 당시 행정 처리 중에는 이들을 '삼기 매매인(ilan gūsai hūdai niyalma)'이라고 적었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내무부에 소속되어 내고의 본은을 수령하고 내무부의 각 기구에서 위탁한 매매 활동에 종사했다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내무부 상인'이라고 부르겠다.

吳奇衍과 孫曉瑩의 연구를 통해 내무부 상인 제도의 전체상이 그려졌지만, 여전히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첫째, 내무부 상인은 대부분 내무부를 구성하는 '상삼기 보오이' 중에 선발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과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이들 역시 내무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상인 제도 도입의 배경과 그 목적, 상인에게 주어진 '특권과 의무'의 의미, 선발과 승계의 원칙, 관리 체제의 변화 과정 등 제도의 전체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내무부 구성원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조망해야 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사료의 한계로, 새롭게 존재가 드러난 중소 상인들의 상업 활동 양태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매년 息銀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했는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성경 내무부 당안인 『黑圖檔』의 관련 문건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북경의 내무부 상인 제도 도입과 관련된 당안 자료는 아직 소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강희 10년(1671) 성경의 내무부 상인 도입 관련 문서가 사실상 내무부 상인 제도 도입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韋慶遠이 『黑圖檔』의 일부 문서를 選譯한 『淸史資料』 제5집에 수록된 해당 문서를 처음 인용한 이래로 여러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어왔다.[18] 최근까지

18) 韋慶遠,「康熙時期"生息銀兩"制度的初創和運用－對淸代"生息銀兩"制度衰過程硏究之一」,『中國社會經濟史硏究』, 1986(3). 關嘉錄·王佩環 譯, 佟永功 校,「《黑圖檔》中有關莊園問題的滿文檔案文件匯編」, 中國社會科學院歷史硏究所淸史硏究室

도 賴惠敏과 孫曉瑩이 내무부 상인 제도의 도입 과정과 운영 원리를 보여주는 자료로 분석하였듯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19]

마침 근년에는 중국 遼寧省檔案館에서 강희조에서 함풍조에 이르는 약 200여 년 동안의 성경 내무부 당안을 『黑圖檔』이라는 이름으로 公刊하였다.[20] 이 사료집에는 지사 격인 盛京掌關防佐領(건륭 17년 이후 성경 총관내무부)이 본사인 북경 총관내무부, 그리고 성경 五部, 奉天將軍衙門 등 성경에 있는 다른 아문들과 주고받은 滿·漢文 서신이 수록되어 있다.[21] 여기에는 상술한 강희 10년의 내무부 상인 제도 도입에 관련된 문서뿐만 아니라, 내무부 상인의 관리 문제와 관련된 다수의 행정 문서가 실려 있다. 이 같은 문서들을 활용하여 그간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던 내무부 상인의 신분과 성격, 그 활동상을 밝혀내고자 한다. 성경의 내무부 상인 연구는 향후 전체 내무부 상인 중 다수를 차지하였던 북경의 내무부 상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한다.

그리하여 본고의 제 Ⅰ장에서는 강희 10년(1671) 성경 내무부에 상인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이 시기가 '성경 내무 기구의 건립기'였다는 관점

編,『淸史資料』第五輯, 中華書局, 1984에 해당 문서 두 건이 選譯되어 있다.

19) 賴惠敏, 앞의 책; 孫曉瑩 2014(b), 앞의 글; 孫曉瑩 2020, 앞의 글.

20)『黑圖檔·咸豐朝』(全17冊), 趙煥林 主編, 遼寧省檔案館 編, 北京: 線裝書局, 2016; 『黑圖檔·乾隆朝』(全24冊), 趙煥林 主編, 遼寧省檔案館 編, 北京: 線裝書局, 2016; 『黑圖檔·雍正朝』(全30冊), 趙煥林 主編, 遼寧省檔案館 編, 北京: 線裝書局, 2016; 『黑圖檔·嘉慶朝』(全58冊), 趙煥林 主編, 遼寧省檔案館 編, 北京: 線裝書局, 2016; 『黑圖檔·康熙朝』(全56冊), 趙煥林 主編, 遼寧省檔案館 編, 北京: 線裝書局, 2017; 『黑圖檔·道光朝』(全52冊), 趙煥林 主編, 遼寧省檔案館 編, 北京: 線裝書局, 2017; 『黑圖檔·乾隆朝部來檔』(全46冊), 趙煥林 主編, 遼寧省檔案館 編, 北京: 線裝書局, 2018; 『黑圖檔·乾隆朝部行檔』(全46冊), 趙煥林 主編, 遼寧省檔案館 編, 北京: 線裝書局, 2018.

21) 『黑圖檔』은 행정적 필요성에 의해 성경 장관방좌령과 각 아문 사이에서 오고 간 왕래 문서를 모두 謄錄한 副本이다. '黑圖檔'이라는 서명은 당안관 측에서 편찬하면서 일부 책자의 표지에 적힌 題名, 즉 'hetu baita be ejehe danggan(다른 일을 기록한 당안, 한문명 存査檔)'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성경 장관방좌령이 내부적으로 발행한 문서로 보이는 '存査檔'은 전체 당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모두 북경 총관내무부에서 성경 장관방좌령에게 보낸 京來檔, 그 역방향의 京行檔, 성경의 다른 아문에서 보낸 部來檔과 그 역방향의 部行檔으로 구성되어 있다. (王天馳, 앞의 글, pp.533-555 참조) 최근 朝代별로 엮은 이 사료집이 차례차례 출간되면서 성경 내무부 당안을 활용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黑圖檔』을 활용한 연구 현황은 高雅婷, 「《黑圖檔》整理與研究述評」,『蘭台世界』, 2021.8 참조.

에서 살펴보겠다. 이와 더불어, 상인의 신분을 규명하는 데에 필요한 성경 내무 기구의 전체 구성원에 대한 소개를 곁들였다. 제 Ⅱ장과 제 Ⅲ장에서는 내무부 상인 제도의 도입 과정과 운영 방식을 꼼꼼히 규명하여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이 다름 아닌 '差役으로서 매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alban i niyalma)'이었음을 밝히겠다. 제 Ⅱ장에서는 총 8건의 '강희 10년 성경의 내무부 상인 도입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선발된 상인의 신분과 상인으로서 맡게 된 의무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제 Ⅲ장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의 운영 방식을 논하겠다. 먼저, 기존 상인과 강희 23년(1684)에 증원된 상인의 신원 차이로 인해 이후 상인에 대한 관리 방식이 변화하였음을 밝히겠다. 또, 상인이 노환이나 가세 몰락으로 차역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제 Ⅳ장에서는 이들이 수행한 차역이 강희 연간 성경 內庫 재정에 기여한 정도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전제로 상인의 차역 중 하나인 '息銀 납부'를 위해 내무부 상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운용하였는지를 밝히겠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밝혀둘 것이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정식 기구로서 성경 총관내무부는 건륭 17년(1752)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강희 연간의 성경 內庫 소속 상인을 '내무부 상인'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 순치 연간부터 關防을 수령한 관원, 즉 掌關防佐領이 성경의 내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또 내무부 정식 설립 이전에도 속하 기구인 廣儲司, 都虞司, 掌儀司, 會計司, 營造司의 5司가 갖추어져 있었다. 요컨대, 강희 연간 성경에는 '내무부'의 명칭을 단 정식 기구만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사실상 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었다. 강희 23년에 편찬된 『盛京通志』에 이미 내무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강희 연간의 성경 內庫 소속 상인 역시 '내무부 상인'으로 칭하겠다.[22]

22) 성경 내무부의 설치 시점에 대한 논의는 佟永功, 「淸代盛京全管內務府設置沿革考」, 『滿族硏究』, 2002(1); 任玉雪, 「盛京內務府設立時間再探」, 『歷史檔案』, 2003(1) 참조.

Ⅰ. 성경의 내무부 상인 제도 도입

강희 9년(1670) 정월의 어느 날, 성경 내무를 관장하는 좌령들은 북경의 총관내무부에 내고 물자의 매매를 전담할 상인을 신설해달라는 呈文을 올렸다.

> 해마다 세 구사의 [실과 布를] 만들고 남은 면화와 소금을 팔기, 사용할 각종 물품을 찾아 구매하기, 가격 흥정하기, 점포 임대료를 징수하기, 은[색]의 좋고 나쁨을 살피기, 이 같은 바에 전담으로 둔 상인이 없어서 모두 庫吏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저희에게 [있어] 각종 물품을 庫에 징수하고 四柱淸冊(:출납문서)을 적는, 이 같은 일은 저희 소관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다면 저희에게 무슨 변명할 바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몸이 庫에 있으므로 사고파는 등의 일[을 하는 때에], 모든 항목의 시세를 훤히 알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例에 따라서 庫吏 외에 따로 상인을 두어 주십시오.[23]

內庫에 상인을 신설해달라는 청원은 다름 아닌 내고의 관원인 司庫와 庫吏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내고 물자 매매는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닐뿐더러 늘 庫에만 있어 시세를 잘 모른다는 것이 사유였다. 이들의 청원 사항을 긍정적으로 논의한 성경의 좌령들은 곧바로 이 안건을 북경에 보고하였다. 그 결과,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내무부 상인 제도가 성경에 도입되었다.[24]

---

23) 『黑圖檔·康熙朝』 제11책, 10, pp.20-21, 강희 9년 정월 초9일 京行檔.
"aniyadari ilan gūsai weileme funcehe kubun, dabsun be uncara, baitalara yaya hacin i jaka be baime udara, hūda gisurere. puseli turihen i menggun be gaijara, menggun i sain ehe be tuwara, ere jergi babe cohome sindaha hūdai niyalma akū ofi gemu ulin i niyalma beye sei yabumbi. mende yaya hacin i jaka be ku de bargiyara, asarara bure gaire tucike dosika dangse be ejere, ere jergi baita meni afaha tušan be dahame, ufarabure adabure oci mende ai gisurere ba bi. meni beyese ku de bisire be dahame, udara uncara jergi baita, yaya hacin i erin i hūda be bahafi getukeleme sarakū, tašarara ufarabure ohode meni alime mutere ba waka. kooli songkoi ulin i niyalma ci tulgiyen cohome hūdai niyalma sindareo."

24) 강희 9년 정월의 청원 문서를 시작으로 이 사안을 둘러싸고 성경과 북경 사이에 총 8건의 서신이 오고 갔다. 이 문서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Ⅱ장에서 후술.

이들이 상인 신설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비록 '성경에 내고 물자를 매매하는 일이 상인을 따로 둘 만큼 많지 않다'는 이유로 총관내무부에서 퇴짜 놓았지만, 3년 전인 강희 6년(1667) 정월에도 같은 청원을 한 바 있었다.[25] 성경의 내무부 상인은 북경의 총관내무부가 아닌 성경 내고의 말단 관원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도입하게 된 셈이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상인 신설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 성경 내고의 司庫와 庫吏들이라면, 官에 전속 상인을 둔다는 발상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아니, 그 전에 이들이 상인 신설을 요청한 속내가 따로 있었었던 것은 아닐까?[26]

상인 신설 청원에 관련된 문서만 골라 본다면 놓치기 쉽지만, 강희 6년 정월과 9년 정월에 성경에서 발송한 상인 신설 청원 서신이 담긴 봉투 안에는 司庫와 庫吏의 다른 청원 서신도 함께 들어있었다. 강희 6년 정월에는 庫吏 열 명이 성경 호부의 例대로 봉록을 은 1냥에서 2냥으로 올려달라 청원하였다.[27] 총관내무부에서 기각하자, 강희 9년 정월에 재차 상인 신설과 함께 錢糧(:녹봉) 인상을 요청하였다.[28] 이번에는 司庫와 庫吏 각각의 신분에 맞는 예복을 하사해달라는 요청도 함께였다.[29] 전량 인상, 품급에 맞는 의복 하사는 복무 조건 향상을 기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요청 사항들과 함께 본다면, 상인 신설 청원 역시 문면 그대로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을 목표한 것으로 보인다.

시선을 상인에게서 떼어 전체상을 둘러보면, 이러한 청원은 이채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 시기, 즉 강희 초년은 성경 내무 기구가 확립되어가는 '건립기'였다. 상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관의 설치가 비일비재하고 그에 따라 관원과 바이탕가(baitangga: 관청에서 하급 실무를 처리하는 未入

25) 『黑圖檔·康熙朝』 제10책, 5, p.7, 강희 6년 정월 초9일 京行檔; 제1책, 186, pp.374-375, 강희 6년 시월 초1일 京來檔.

26) 강희 10년에 선발된 내무부 상인에는 司庫와 庫吏의 친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상인으로서 內庫銀을 수령하여 운용하게 된 것을 혜택으로 간주한다면, 이를 바라고 상인 신설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던져볼 수 있다.

27) 『黑圖檔·康熙朝』 제10책, 4, pp.6-7, 강희 6년 정월 초9일 京行檔.

28) 『黑圖檔·康熙朝』 제11책, 8, pp.17-19, 강희 9년 정월 초9일 京行檔.

29) 『黑圖檔·康熙朝』 제11책, 9, pp.19-20, 강희 9년 정월 초9일 京行檔; 제11책, 11, pp.21-22, 강희 9년 정월 초9일 京行檔.

流)[30]들의 소관 업무가 점차 분화되어갔다. 입관 직후 내무부를 비롯한 아문과 소속 관원들이 북경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옛 수도 성경에는 잠시 행정 공백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성경을 비롯한 요동 지역에는 여전히 이전하지 않은 황실 소유의 장원[tokso]과 果園이 남아 있었다. 이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에 대한 수요도 계속 있었다. 더군다나 누르하치와 홍타이지의 능묘와 옛 궁전도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에 순치 3년(1646)에는 정황기, 양황기 좌령 1명씩을 세워 성경 내무를 총관하게 하였다. 순치 8년(1651) 도르곤의 실각으로 그가 소유했던 기가 황제 직속기로 편입되자 성경에도 정백기 좌령 1명이 증원되었다. 순치 13년(1656)에는 세 좌령 중 가장 이력이 오래된 사람에게 '管理盛京內務關防'을 지급하여 장으로 삼았다.[31]

북경의 황실에 헌상할 특산물을 채취·수렵·생산하고 궁전과 능묘를 유지·보수하며 내부적인 자급자족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할 의무, 즉 '차역(alban)'을 부과받은 사람들은 모두 상삼기 보오이였다. 성경 상삼기 보오이는 강희 초년 기준 3니루와 19혼토호에 인적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니루마다 좌령 1명과 니루 領催 6명을, 19혼토호에는 倉長 3명과 倉上人 9명을 두어 각각 소속된 인원들을 관리하게 하였다.[32] 이들은 3년마다 호적 조사[比丁]를 실시하여 호구책을 작성하였다. 북경에 秀女로 보낼 13세 이상의 여아를 조사하고, 관할하는 남녀의 혼인을 감독하였다. 관할 인원을 관직에 추천하거나 관할 인원에 대한 연대 보증 책임을 지는 것도 이들의 몫이었다(표 1 참조).

---

30) 관품이 있는 직관을 관원[hafan], 9품 안에 들지 못하는 하급 직관을 바이탕가(baitangga)라고 한다. 성경 내무 기구의 직관은 대부분 바이탕가로,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관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예컨대, 바이탕가인 내고의 庫吏이 승진하여 내고의 수장인 司庫가 되면 6품 또는 7품 관원의 반열에 올랐다.

31) 『盛京通志』 康熙 23年本, 卷14 「職官志」 "內務府, 順治三年設正黃旗, 鑲黃旗佐領各一員. 八年添設正百旗佐領一員. 十三年給關防, 併添司庫."

32) 『黑圖檔·康熙朝』 제9책, 145, pp.197-200, 강희 원년 오월 초2일 京行檔; 제11책, 138, pp.296-297, 강희 10년 정월 18일 京行檔.
북경의 경우, 각 혼토호에 관령 1명과 혼토호 영최 6명을 두었다. 본래 혼토호 소속 인원 관리는 이들의 소관이었으나, 성경에는 영최를 따로 두지 않아 宣徽院의 창장과 창상인이 혼토호의 인적 관리까지 도맡았다.

표 1. 강희 초년의 성경 內三旗 편제: 인적 관리 체제[33]

	좌령하인 (3니루)	관령하인 (19혼토호①)
관리자	좌령 3명, 영최 18명	창장 3명, 창상인 9명
구성원	**협의의 좌령하인:** 2,904명② ·영최, 甲兵, 바이탕가, 상인, 장인, 牧丁, 兼丁 등 차역 면제자: 978명 ·차역 부담자(餘丁[34]): 1,929명 (강희 14년 초 기준)	**신저쿠인(협의의 관령하인)** ·바이탕가 등 차역 면제자: 70명④ ·차역 부담자 ·口糧 수급자: 217명⑤ ·田地 경작자 (강희 10년 기준)
	총 棉莊 45처, 靛莊 12처, 鹽莊 3처③ 장원당 ·莊頭를 포함하여 額丁 10명 ·餘丁 약간 명(강희 14년에 280명)⑦ (강희 9년 기준)	총 糧莊 22처⑥ 장원당 ·莊頭를 포함하여 額丁 10명 ·餘丁 약간 명 (강희 10년 기준)

전거: ①,⑤,⑥『黑圖檔·康熙朝』제11책, 124, pp.278-281, 강희 10년 정월 12일
(이하 서지 사항은 11-124와 같이 약칭)
②⑦『黑圖檔·康熙朝』12-137 ③『黑圖檔·康熙朝』11-12
④『黑圖檔·康熙朝』53-461

33) 任玉雪 2003(2)은 遼寧省檔案館에 소장된 『盛京內務府戶口冊』에 기초하여 성경 상삼기 보오이를 그 소속에 따라 관령하인, 좌령하인, 삼기하인으로 분류하였다. 관령하인에는 糧莊人과 신저쿠인이 있다. 장원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한 양장인과 달리, 신저쿠인은 궁정의 일상적인 관리를 도맡으면서 양장인이 생산한 양식을 분급 받아 생활하였다. 신저쿠인은 관령이 직접 관리하였기 때문에 관령하인은 이들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黑圖檔』에서도 관령하인(hontohoi niyalma)는 신저쿠인에 등치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이하 이들을 '협의의 관령하인'으로 지칭). 관령에 함께 속해 있더라도 양장인과 신저쿠인의 신분 구별은 엄격하여 상호 혼인이 엄금되었다. 좌령하인에는 棉·鹽·靛莊人과 打漁戶, 採蜜戶 등의 각종 戶, 匠人, 牧丁 등이 있다. 『黑圖檔』에서 좌령하인(nirui niyalma)은 대개 장원과 戶에 소속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만을 일컫는다(이하 이들을 '협의의 좌령하인'으로 지칭). 棉·鹽·靛莊人은 니루에 속하지만 '협의의 좌령하인'과는 별개의 신분으로 인식되었다. 양장인과 면·전·염장인은 장원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자가 상호 혼인한 예나 염장을 양장으로 개편한 예도 보인다. 이외에도 강희 원년 이전에 니루에서 나간 果園丁 등의 삼기하인이 있다. 표 1에는 다음 장의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협의의 좌령하인, 신저쿠인, 장원인(toksoi niyalma)만 뽑아 정리하였다. 청조는 상삼기 보오이들에 대해서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집단 간에 통혼을 금지하여 신분 이동을 제한하였다. 이 같은 신분의 '終身性'은 성경 상삼기 보오이들의 주요한 속성으로, 내무부 상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동시에 상삼기 보오이의 장정들은 맡은 차역의 내용에 따라 각기 '內庫', '宣徽院', '採捕衙門', '內工部'의 내무 기구에 배속되었다.[35] 각 기구의 관원와 바이탕가들은 이들이 매년 정액의 생산물을 문제없이 생산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감독하였다. 매년 창고에 들어온 생산물의 수량을 계산하여 장부를 적고 생산물을 북경에 운반하는 등의 전반적인 생산·관리 사무를 맡았다. 상인 신설을 요청하였던 司庫와 庫吏 역시 이러한 차역 관리를 맡은 내무 기구의 직관 중 하나였다.[36]

성경 내무를 관장하는 세 좌령을 세운 순치 8년 이후에도 니루·혼토호의 직관과 각 내무 기구의 직관은 계속 증설되는 과정에 있었다. 강희 4년(1665)에 북경의 총관내무부는 성경에서 현재 임용한 관원·바이탕가의 명단과 십삼아문을 설치한 순치 10년(1653)[37] 이전까지 임용한 관원·바이탕가의 명단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좌령의 사무실에는 명단이 남아 있지 않았지만, 순치 10년 칠월 이후의 명단은 錢糧을 지급한 성경 호부에서 보관하고 있어 답신을 올릴 수 있었다.[38] 이 답신 내용을 바탕으로 순치 10년 이후 직관의 증설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

---

34) 세 니루에는 장원과 戶에 편성하고도 남은 장정들이 있었다. 또 장원은 장정 1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는데, 額丁 외에도 수 명에서 수십 명의 餘丁이 있었다. 신저쿠인 중에도 아무런 직을 맡지 못한 장정들이 있었다. 이러한 장정들에게도 모두 차역을 부과하였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차역'이 부과된 것은 성경 상삼기 보오이가 '황제의 노복'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35) 즉, 성경 상삼기 보오이들을 인신적으로 관리하는 '인적 관리 체제' 즉 내삼기 편제와 이들의 노동력을 징수하는 '차역 관리 체제' 즉 내무 기구가 중첩되어 있었다. 이 중첩된 두 체제의 수장이 바로 '管理盛京內務關防'을 맡은 좌령이었다.

36) 관원과 바이탕가는 직관으로서 성경 호부에서 매달 1-3냥의 錢糧을 지급받았다. 또 자신을 포함하여 장정 1-4명 몫의 차역을 차등적으로 면제받았다. 따라서 성경 상삼기 보오이는 '錢糧 수취와 차역 면제' 여부를 기준으로 '차역을 납부하는 생산자' 집단과 '생산자를 감독하는 관리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37) 북경에서는 순치 10년(1653)에 내무부를 명대의 환관 기구인 十三衙門로 대체하였다. 순치 18년(1661), 강희제는 즉위하자마자 십삼아문을 철폐하고 내무부를 복구하였다. 성경의 내무 기구도 이러한 개편의 흐름 속에 놓여있었을 것으로 보인다(祁美琴, 앞의 책, 제3장 참조).

38) 王天馳에 따르면, 순치 연간에는 아직 성경 내무 기구의 문서 행정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다. 행정 문서를 문서방에서 따로 보관하지 않고 좌령 개인의 자택에 둔 사실이 『黑圖檔』에서 확인된다. 그 때문에 순치 연간의 당안은 강희 초년 당시에도 이미 상당수 유실되어 사안 처리에 차질을 빚었다(王天馳, 앞의 글, pp.87-88 참조).

(표 2 참조).

모청포 영최 21명, 목정 16명, 창상인 8명과 장원 영최 3명이 모든 차역을 감독하여야 했던 순치 10년과 달리, 순치 13년(1656)에는 대대적으로 직관이 신설되었다.[39] 원래 구사[旗]마다 하나씩 있었던 庫 세 곳에 저장된 일부 물품을 새로 세운 財庫(ulin i ku)로 옮기면서, 새로운 庫의 사무를 처리할 司庫 3명과 庫吏 10명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해에 과원에 催長 1명, 領催 6명, 筆帖式 1명을, 궁전 보수를 관장하는 최장 1명, 영최 6명을, 장원에 영최 3명, 창장 2명, 창상인 8명, 필첩식 2명을, 그리고 牧長 1명, 牧丁 9명과 관방 필첩식 2명을 새로 두었다.[40] 이듬해에는 기존의 영최 6명으로는 업무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청원으로 장원 영최 3명과 과원 영최 3명을 증원하였다. 순치 16년(1659)에는 본래 왕의 속하였던 두 혼토호가 상삼기로 편입되면서 혼토호의 구성원들을 관리할 창상인 1명을 증설하였다. 순치 17년에는 필첩식들의 업무 경감 요청으로 과원 필첩식 1명과 관방 필첩식 1명을 증원하였다. 뒤이어 강희 2년(1663)에 창장 1명을, 강희 3년에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牧長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牧長 2명과 牧丁 7명을 증원하였다.[41]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동시기 혼토호의 인적 관리를 전담할 영최를 따로 세워 업무 부담을 덜어달라는 창상인들의 청원도 있었다.[42]

---

39) 關防을 성경 내무를 관장하는 좌령에게 지급한 것도 바로 이 해인 것으로 보아 순치 13년에는 성경 내무 기구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0) 각 내무 기구의 직관은 크게 영최와 필첩식으로 나뉜다. 영최(bošokū)는 글자 뜻 그대로 생산과 납부를 '독촉하는' 일을 맡았다. 영최들의 수장이 최장이다. 필첩식(bithesi)은 역시 뜻 그대로 징수한 생산물의 액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주된 사무였다. 이외에도 倉의 저장과 출납을 관리하는 창장과 창상인, 庫의 저장과 출납을 관리하는 사고와 고리가 있었다.

41) 『黑圖檔·康熙朝』 제9책, 248, pp.350-356, 강희 5년 정월 14일 京行檔.

42) 『黑圖檔·康熙朝』 제9책, 145, pp.197-200, 강희 원년 오월 초2일 京行檔.
상술했다시피 성경 선휘원 속하의 창장과 창상인은 선휘원 속하 업무뿐만 아니라, 혼토호 영최의 직무까지 겸하고 있었다. 이에 강희 원년, 창상인들은 혼토호 영최를 신설하거나 일을 도울 兼丁을 주어 업무 부담을 경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강희 10년 정월에는 영최의 일을 겸하니 북경의 혼토호 영최의 등급으로 錢糧을 지급해달라는 창장들의 청원이 있었다. 이러한 창상인들의 청원은 '내고 물자 매매'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니 상인을 신설해주고 성경 호부의 例대로 錢糧을 인상해달라는 사고와 고리들의 요청과 무척 닮아있다.

표 2. 순치 10년(1653)-강희 5년(1666)의 직관 증설[43)]

바이탕가·관원	순치 10년①	순치 16년	강희 5년②	소관 사무	소속기구
關防筆帖式		2	3	성경장관방좌령 명의의 문서 작성	
[모청포]催長		3	3	棉·鹽·靛莊의 생산물 및 餘丁, 匠役이 생산한 실·布 납부 독책. 3庫의 물자 출납 관장③	內庫⑧ dorgi ku
[모청포]영최	21	15	15		
[모청포]필첩식		3	3	靑冊 작성	
庫吏		10	10	면화·쪽·소금·布 징수, 財庫의 물자 출입 관장, 점포 임대료 수취, 내고의 잉여 물자 매각④	
果園 영최		9	6	果園丁의 인적 관리 및 은량 수취, 각종 과일·잣 등 징수⑤	採捕衙門⑨ booi buthai jurgan
[採蜜]영최			3	주히얀이 채취한 꿀 납부 독책	
과원 필첩식		1	2	잡은 세린어, 수달, 주히얀에게 징수한 採蜜, 乾肉, 과원정에게 징수한 전량은·과일 액수 등 기록⑥	
牧長		1	3	牧群 관할	
牧丁	16	9	15		
[궁전]催長		1	1	궁전을 유지·보수하는 匠役 독책	內工部⑩ booi weilere jurgan
[궁전]영최		6	6		
倉長		2	3	糧莊의 움 순시, 糧莊의 생산 능력 계량, 신저쿠인·주히얀·울라인 등에게 口糧 분배, 말의 꼴 분배⑦	宣徽院⑪ booi jeku jurgan
倉上人	8	9	9		
[倉]필첩식		2	2	糧冊 작성	
[장원]최장	3	6	6	糧莊의 양곡 생산 독책	

전거: ① 순치 10년과 16년의 인원수는 『黑圖檔·康熙朝』9-248에 근거함
②『黑圖檔·康熙朝』9-245 ③『黑圖檔·康熙朝』53-407; 12-58
④『黑圖檔·康熙朝』12-58 ⑤『黑圖檔·康熙朝』2-60
⑥『黑圖檔·康熙朝』11-204 ⑦『黑圖檔·康熙朝』9-145; 11-138
⑨『黑圖檔·康熙朝』9-123; 9-129; 9-137; 9-151; 9-153; 9-154; 9-156; 9-157; 9-310; 9-332
⑧,⑩『黑圖檔·康熙朝』11-137 ⑪『黑圖檔·康熙朝』11-128

새로운 직관이 설치되면서 유관 사무를 둘러싸고 각 직관 사이에 업무 조정 논의의 필요성도 발생하였다. 財庫와 이를 관리할 사고·고리를 신설한 순치 13년(1656)부터 강희 12년(1673)에 이르기까지는 모청포 최장·영최와 사고·고리 사이에서 업무 분담을 두고 혼란이 계속되었다. 본래 면·전·염장에서 생산한 면화, 쪽, 소금과 실, 布는 모청포 최장과 영최가 생산을 독촉하여 니루마다 하나씩 둔 3庫에 징수하였다. 그런데 財庫를 새로 설치하면서 기존에 3庫에서 보관하던 금은 및 면화, 소금 등을 새로운 財庫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모청포 최장과 영최의 소관이었던 업무도 財庫를 관장하는 사고·고리들에게 일부 넘겨졌다. 이 같은 업무 분담 과정에서 '면화와 포는 어느 庫에 저장할 것인가', '庫는 누가 지킬 것인가' 등 소관 업무와 책임 주체를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하였다.[44] 이 역시 내무 기구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법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내무부 상인 신설 청원이 나왔던 강희 초년은 차역 관리 수요에 대응하여 직관이 신·증설되는 내무 기구의 '건립기'였다. 기존 바이탕가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증원을 요구하였다. 또 각 직관 간의 업무 분장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강희 6년과 9년 두 차례에 걸친 사고와 고리들의 상인 신설 청원 역시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고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은 다른 바이탕가들의 청원과 다름없었다.

사고와 고리들의 상인 신설 요청이 영 맥락 없는 청원 사항이 아니었음은 밝혔지만, 여전히 이런 발상이 어떻게 튀어나오게 된 것인지는 해

---

42) 표 2는 『黑圖檔·康熙朝』의 문건과 康熙朝『大淸會典』,『盛京通志』康熙23年本, 乾隆元年本,『欽定盛京通志』, 光緖朝『盛京通典備考』를 대조하여 작성하였다. 기존에 성경 내무 기구는 廣儲司, 會計司, 掌儀司, 都虞司, 營造司의 五司 체제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黑圖檔』의 문건을 살펴본 결과, 강희 16년(1677)의 대대적인 기구 개편 이전 성경 내무 기구는 內庫, 採捕衙門, 內工部, 宣徽院의 4기구 체제였다고 추정된다. 강희 16년 이후 내고는 광저사, 내공부는 영조사, 선휘원은 회계사로 개편되었다. 채포아문은 과원을 관장하는 장의사와 어렵·수렵을 관장하는 도우사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내 각 연도의 직관 수는 그 해에 錢糧을 받은 직관의 實數로, 革退나 사망으로 定員을 채우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44)『黑圖檔·康熙朝』제12책, 58, pp.74-81, 강희 12년 팔월 초4일 京行檔.

명이 썩 시원찮다. 성경 내고의 사고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官에 전속 상인을 두자는 청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다시 강희 6년과 9년에 상인 신설 요청과 함께 올린 다른 청원 문서를 살펴보면, 錢糧 인상과 의복 하사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에 성경 호부와 북경 총관내무부의 사례를 근거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錢糧 인상을 요구할 때에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동종 직무에 종사하였던 성경 호부의 고리들이 받는 錢糧의 액수이었다. 『盛京通志』에 따르면, 성경 호부의 庫는 盛京城의 남동쪽에 위치한 德盛門 내에 있었다. 內庫는 성경성 남서쪽에 위치한 大淸門 내에 있어 部庫와 상당히 가까웠다.[45] 따라서 성경 호부의 고리들과 내고의 고리들은 업무 유사성으로 보나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성경 내무 관원과 바이탕가의 錢糧은 성경 호부에서 수령하였으니 이들의 월급 사정을 잘 아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또 북경에 매년 생산물을 납부하러 가는 바이탕가 편을 통해 북경의 소식도 접했을 개연성이 크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강희 10년 성경에 내무부 상인을 두기 전에 이미 북경 총관내무부와 성경 호부에서는 庫의 잉여 물자를 매각하는 전담 상인을 두고 있었다. 상인의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성경 내고의 고리들이 이러한 성경 호부 상인의 例를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북경 총관내무부 상인의 例로 조건이 결정되자 이보다 업무 부담이 훨씬 덜한 성경 호부 상인의 例에 따라 시행해줄 것을 재차 청원하였기 때문이다. 애당초 성경 내고의 사고와 고리들이 '내고 물자 매매'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사례를 보고 한 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상인 신설 요청은 성경 내고 소속 사고·고리들의 독자적인 발상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성경 部庫의 상인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부담을 덜고자 한 소산이었다고 생각된다.

---

45) 『盛京通志』康熙 23年本, 卷13「公署志」"戶部公署. 庫. 在德盛門內, 共十四間, 樓八間."; "內務府公署. 庫, 在大淸門內之西樓七間, 其南轉角樓十間."

Ⅱ. 내무부 상인의 의무와 출신

첫 고배를 마신 지 3년이 지난 강희 9년(1670), 성경 내고의 사고와 고리들은 재차 상인 신설을 요청하였다. 기각되고도 재차 청원한 이들의 사정을 참작했기 때문인지 이번에는 곧바로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상인 지원 조건 통보, 이에 따른 상인 지원자 명단 제출과 선발자 결정, 상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논의가 속속 이루어졌다. 이 장에서는 강희 9, 10년의 1차 상인 선발 과정에서 오고 간 여덟 건의 문서를 꼼꼼히 분석하여 '누가 상인으로 선발되었는지' 그리고 '맡은 일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성경의 내무부 상인의 성격을 살펴보려 한다.

그림 1. 내무부 상인 제도 도입 논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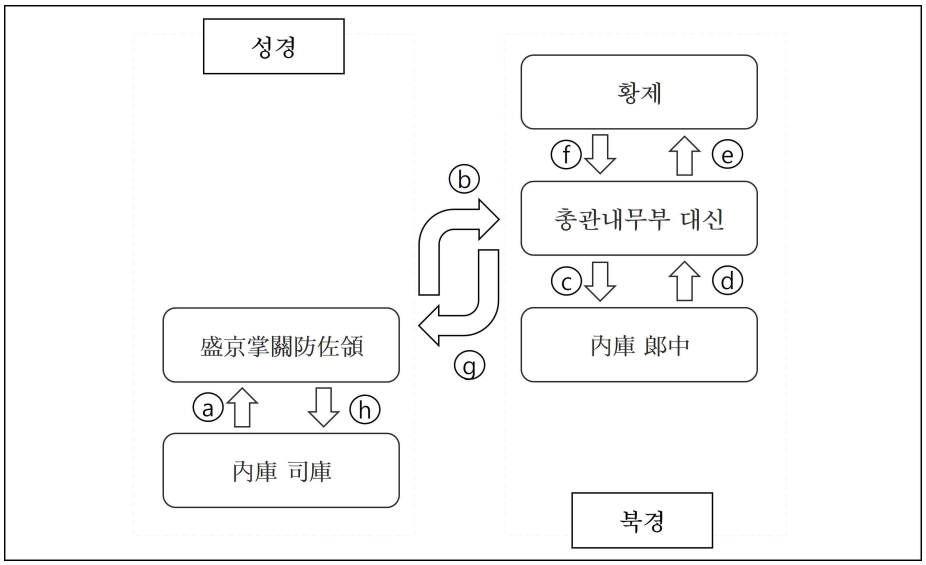

성경 상삼기 보오이 니루·혼토호와 내무 기구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은 곧바로 성경 掌關防佐領을 통해 북경 총관내무부에 보고되었다. 먼저 구성원들의 청원 사항이 발생하면 각 기구나 니루·혼토호의 관리자는 이를 성경 내무를 관장하는 세 좌령에게 보고하였다. 세 좌령은 청원 사항을 논의한 후 의견을 덧붙여 성경 장관방좌령의 명의로 북경 총관내

무부에 呈文을 올렸다. 서신을 수령한 총관내무부 대신은 각 사안의 내용에 따라 주관 기구의 郎中에게 위탁하여 집행 여부를 논의하게 하였다. 낭중들의 논의로 결정된 사항은 내무부 대신의 비준을, 경우에 따라서는 황제에게 상주되어 재가를 받은 후 성경에 다시 전해졌다. 강희 10년의 내무부 상인 제도 도입 논의 과정 또한 이와 같았다(그림1 참조).

> 1-ⓓ 성경에 해마다 세 구사가 사용하고 남은 면화, 소금 등의 물품을 팔기, 또 사용할 각가지 물품을 구하여 사기, 가격 흥정하기 등의 일이 있으므로, 상인을 두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미 저곳(:성경)의 庫에 [쌓여] 있는 은을 경영 맡긴다면, 息銀을 얻으면서 사고파는 등의 일도 그르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니루 장긴 신다리 등이 저곳의 명망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얻어 보고하면, 사람마다 300냥부터 100냥까지 능력을 보고 [차등적으로 주어] 경영 맡기게 하시지요.[46]

성경에 내무부 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한 북경 총관내무부의 내고 낭중들은 논의 끝에 지난번과 달리 상인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내었다. 신설 상인들에게는 요청한 '내고 물자 매매'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성경 내고의 存銀을 역량에 맞게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息銀을 거두자는 말도 함께였다. 성경 장관방좌령은 답신을 받은 뒤 곧바로 니루와 혼토호에서 상인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지원자 13명의 명단을 올리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內庫銀을 경영하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例를 문의하였다.[47] 총관내무부에서는 성경에서도 북경 내무부 상인의 例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통보해왔다.

---

46) 『黑圖檔·康熙朝』 제2책, 108, pp.220-223, 강희 9년 윤이월 초4일 京來檔.
"mukden de aniyadari ilan gūsai weileme funcehe kubun, dabsun i jergi jaka be uncara, jai baitalara yaya hacin i jakabe baime udara, hūda gisurere jergi baita bisire be dahame, hūdai niyalma sindaci acambi sere anggala, beleni tubai kude bisire menggun be hūda jafabuci, madahan bahambime, udara uncara jergi baita be inu tookaburakū ombi. uttu ofi, nirui janggin sindari se tubai derengge banjishūn urse be bahara be tuwame, emu niyalma de ilan tanggū yan ci fusihun emu tanggū yan ci wesihun, acarabe tuwame hūda jafabukini."

47) 『黑圖檔·康熙朝』 제11책, 126, pp.283-285, 강희 10년 정월 12일 京行檔.

2-ⓓ 삼관보 니루의 정명귀, 왕우생, 혜력삼, 이투 혼토호의 택광선, 신다리 니루의 김종당, 마삼, 니야하치 혼토호의 관세훈, 이 일곱 사람은 모두 니루, 혼토호의 閑散人이기 때문에 신다리 등이 올린 呈文대로 경영 맡깁니다. 또 **이곳(:북경)의 상인의 例를 살펴보건대, 100냥 수령한 사람에게는 본인을 포함하여 세 장정에게, 200냥 수령한 사람에게는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장정에게, 300냥 수령한 사람에게 본인을 포함하여 아홉 장정에게 [상인의 일을] 겸하게 했습니다. [本]銀 100냥마다 한 해에 네 철[로 나누어] 징수하는 息銀은 50냥으로,** [그 해에] 윤달이 껴있으면 [윤달의] 息銀은 [계산하여]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48] (강조는 인용자 추가)

3-ⓐ 저희가 전에 경영 맡고 싶다고 한 것은, **성경 호부의 상인에게 은 100냥마다 한 해에 거두는 息銀은 30냥으로, 본인을 포함하여 세 장정을 [차역에서] 면제합니다**. 저희는 '혹 이곳(:성경)의 호부[의 例]를 따라 경영 맡길지도 모른다' 하여, '경성의 例는 저희가 모릅니다. 경영 맡고 싶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도착한 서신에, '경성의 例는 은 100냥마다 한 해 거두는 息銀이 50냥'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경영한다 해도, 100냥마다 한 해 거두는 50냥의 은은 어떻게든 얻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납부해야 하는 息銀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어전(ejen)의 은을 수령하고서 本銀 자체를 써버리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팔아서 갚는다고 해도 역부족입니다. 지금 어전의 은을 취하기 전에, 저희가 경영 맡지 못하는 바를 대신들에게 밝혀 청원합니다.[49] (강조는 인용자 추가)

---

48) 『黑圖檔·康熙朝』 제11책, 164, pp.313-314, 강희 10년 팔월 11일 京行檔.
"san guwan boo nirui ding ming gui, wang io šeng, hūi lisan, itu hontohoi ts'e guwang siyūn, sindari nirui jin ts'ung tang, masan, niyahaci hontohoi guwan ši siyūn, ere nadan niyalma gemu nirui, hontohoi sula urse be dahame, sindari sei alibuha songkoi hūda jafabume, jai ubai hūdai niyalma kooli be baicaci, emu tanggū yan jafaha niyalma de beyebe dabume ilan haha, juwe tanggū yan jafaha niyalma de beyebe dabume ninggun haha, ilan tanggū yan jafaha niyalma de beyebe dabume uyun haha kamcibuhabi. emu tanggū yan menggun de, emu aniya duin forgon i gaire madahan i menggun susai yan, anagan i biya bici, madahan i menggun gaire ba akū sembi."

49) 『黑圖檔·康熙朝』 제11책, 164, pp.313-314, 강희 10년 팔월 11일 京行檔.
"meni neneme hūda jafaki sehengge, mukden i boigon i jurgan i hūdai niyalma de emu tanggū yan menggun de emu aniya gaire madahan gūsin yan, beyebe dabume ilata haha guwehebi. be ainci ubai boigon i jurgan i songkoi hūda jafabumbi dere seme, ging hecen i kooli be sarakū. hūda jafaki sehe bihe. te isinjiha bithede, ging hecen i kooli emu tanggū yan menggun de, emu aniya

인용한 문서에 따르면, 북경의 내무부 상인이 本銀 100냥에 대해 매년 납부하는 息銀은 50냥으로, 무려 연이율 50%에 달하였다.[50] 성경의 내무부 상인 내정자들은 과중한 息銀 납부를 감당할 재간이 없다며 비교적 이율이 낮은 성경 호부 상인의 例대로 시행해줄 것을 청원하였다.[51] 성경 호부 상인의 경우에는 연이율 30%로 북경의 내무부 상인에 비해서는 부담이 훨씬 덜하였다. 상인 내정자들의 청원은 총관내무부 내고 낭중들의 논의를 거쳐 황제의 재가를 얻었다. 최종적으로 성경에는 성경 호부의 例와 같은 조건을 적용받는 13명의 내무부 상인이 선발되었다. 내고은 300냥을 수령한 1등 상인은 정명귀 한 명뿐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100냥을 수령한 3등 상인이었다.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에게 내고은을 맡기면서 요구한 연리 30%는 아무리 낮게 재조정된 결과라 하더라도 상당한 高利였다. 당시 『大淸律』에서 규정한 법정 최고 이율은 月利 3%, 즉 연리 36%였다. 더욱이 이자의 총합은 원금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52] 예를 들어, 월리

---

gaire madahan susai yan sehebi. te ainame hūdašaha seme, emu tanggū yan de emu aniya susai yan i menggun ainaha seme baharakū. be te baharakū be same ejen i menggun be alime gaifi, da menggun i beye fayabuhade, meni hehe, juse beye be uncafi toodaha seme inu muterakū. te ejen i menggun be gaire onggo, meni hūda jafame muterakū babe ambasa de tucibume habšambi."

50)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했다시피, 해당 문서를 통해 북경 총관내무부에 이미 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의 경우와 달리, 북경 총관내무부에 언제 상인 제도를 도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소개되지 않았다. 다만 孫曉瑩 2014(b)에 따르면,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內務府奏銷檔』에 순치 17년(1660) 이전에 이미 북경 내무부 상인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료가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내무부 상인 제도의 연원은 순치 8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다. 『黑圖檔』을 보면, 정백기 푸구이 니루의 한 장정이 자신의 아버지는 정백기에 편입되기 전 누르하치의 아들인 아지거의 家人으로 왕의 '상인 영최'였다고 진술한 사례가 있다. 상인을 감독하는 '상인 영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때 이미 '상인 제도'의 원형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黑圖檔·康熙朝』, 제14책, 153, pp.142-153, 강희 22년 이월 15일 京行檔 참조).

51) 성경 호부 당안은 현재 거의 전해지지 않아, 성경 호부 상인 제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자료를 통해 성경에 내무부 상인 제도를 도입하기 전, 이미 호부 상인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2) 『大淸律集解附例(順治三年奏定律)』卷9, 戶律 149. 違禁取利. "凡私放錢債及典當財物, 每月取利, 並不得過三分. 年月雖多, 不過一本一利. 違者, 笞四十, 以餘利計贓, 重[於笞四十]者, 坐贓論, 罪止杖一百."

3%의 조건으로 대출하였다면 33개월 10일이 지난 뒤로는 이자를 받을 수 없었다.[53] 이에 견주면, 기한 없이 매년 연리 30%의 息銀 납부를 요구한 것은 통치의 근간인 律마저 위배한 황실의 경제적 착취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는 강희 10년 상인들에게 내고은을 준 행위를 '대출'로 이해해왔다.[54] 그런데 이번 내고은 수여를 '대출'로 보기에는 이상한 지점들이 있다. 우선, '대출'은 이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이자는 받더라도 원금을 상환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상인으로 선발되면서 수령한 본은은 상인에서 革退되기 전까지는 내고에 반납할 수 없었다. 원금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출이란 생각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내고은을 주도록 결정한 것은 官 측이었지 상인 지원자들이 요청한 일이 아니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상인으로 선발되면 모두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안에서도 상인으로 선발하면서 내고은을 수여하는 행위와 대출 행위를 기록할 때에 명확히 구별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55] 전자는 '본은을 경영 맡긴다(da beyei menggun be hūda jafabumbi)'라고 서술하는 반면, 후자는 '변돈을 놓는다(juwen sindambi)'라고 기록하였다.[56] 내고은 수입·지출 장부에서도 본은에 대한 息銀 수입과 대출에 대한 이자 수입

---

53) 『大淸律箋釋合鈔』, 康熙41年 刊本, 卷9, 違禁取利. "如借銀一兩每月取利銀三分, 計三十三箇月零十日, 則利銀已滿一兩利銀與本銀相停. 是謂一本一利到得利本相停. 雖年月之多, 亦不得復援每月三分之例而算取其息也."

54) 韋慶遠은 강희 10년 성경의 내무부 상인의 本銀 수령을 '官銀을 수령하고 이자를 납부하는 양태가 같다'는 측면에 기초하여 內庫銀 대출, 廣善庫制, 公庫制, 發商生息 등과 함께 '生息銀兩'이라는 하나의 제도로 엮어 정리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張建輝를 위시한 '생식은량' 후속 연구에서 강화되어왔다. 그 결과, 내무부 상인의 본은 경영이 내고은 대출과 원리상 다를 바 없다는 착시를 불러일으켰다. 내무부 상인을 專論한 孫曉瑩과 賴惠敏도 상인으로 선발되면서 본은을 수령한 행위를 '내고은 대출'과 구분 짓지 않았다.

55) 성경의 내무 기구는 강희 39년에 처음 내무부 상인들에게 내고은을 대출해주었다. 내고은 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후술.

56) 다만 내고은의 경영 수익이든 대출 이자든 당안에서는 모두 'madagan'이란 동일한 단어로 적었다. 본고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전자를 '息銀', 후자를 '이자'로 구분해서 서술하겠다.

은 별도의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당시 내무부에서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명확한 차이를 두고 구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57]

상인 선발 시의 내고은 수여 행위가 '대출'이 아니라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먼저, '본은 경영'은 사고와 고리들의 청원으로 부과된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북경 총관내무부와 성경 호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던 例를 참조하면, 소속 상인들은 모두 100냥에서 300냥 사이의 본은을 수령하였다. 소정의 본은을 수령하는 것은 자산 가치가 백만 냥이 넘는 范氏 일가 같은 대상인도 마찬가지였다. 『內務府奏銷檔』의 건륭 31년 유월 6일 자 문서에는 范氏가 '순치 연간에 본은 2백 냥을 상사 받고 매년 息銀 1백 냥을 납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58] 王氏 일가였던 상인 王廷獻도 건륭 31년(1766)에 '본인은 상인으로 본래 본은 1백 냥을 수령하여 이은 60냥을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진술한 기록이 있다.[59] 이미 鹽商이자 銅商으로 내무부에서 국가적 사업을 위탁받고 있었던 王氏 일가와 范氏 일가에게 매년 60냥에서 100냥 남짓의 息銀 납부는 조족지혈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이들 일가가 처음 상인이 된 순치 연간부터 건륭 연간에 이르기까지 매년 소정의 息銀 납부를 요구받은 것은 '본은 경영'이 다름 아닌 상인의 신분을 규정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韋慶遠에 따르면, 만주인은 입관 전부터 家人에게 본전을

57) 강희 39년, 성경 광저사에서 내무부 상인들과 관원·바이탕가에게 내고은을 대출해준 조건은 연리 12%였다. 강희 10년의 내무부 상인 선발 시 수령한 본은에 대한 이율이 30%였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또, 이 대출 조건에서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 같아지는 때는 약 8년 4개월이 되었을 때이다. 대출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강희 44년 삼월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5년 내에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상환 조건을 바꾸었다. 산술적으로 기한 끝인 49년 삼월까지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한다면, 40년 십일월 이전에 대출한 사람 외에는 모두 납부한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대출 도입 초기에 대출받은 사람은 상환 기한이 다하기 전에 이미 완납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不過一本一利'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년이라는 기한 설정은 이 원칙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추정해 봄 직하다. 따라서 강희 39년의 대출 제도는 '낮은 이율', 원금의 기한 내 상환 요구, '不過一本一利'의 원칙 준수 면에서 강희 10년 상인의 본은 수령과 상반된다. 이외의 여러 대출 사례를 참조하였을 때, 내무부는 속하 인원들에게 민간보다 '低利'로 대출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58) 『內務府奏銷檔』 冊281, 건륭 31년 유월 초6일, 賴惠敏, 앞의 책, p.186에서 재인용.

59) 『內務府奏銷檔』 冊285, 건륭 31년 십일월 18일, 賴惠敏, 위의 책, p.186에서 재인용.

주어 대신 장사케 하고 月錢을 받는 관습이 있었다.[60] 내무부의 상인 제도가 여기에서 연원한다면, '본은 수여'는 역으로 '황제의 보오이로서 매매를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신분을 부여해주는 기능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은 경영'은 내무부 상인으로 선발되면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의무 사항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무부 상인이 매년 납부하는 息銀은 대출 이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내무부 상인은 내고 물자 매매와 息銀 납부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기존 차역을 면제받았다. 제 Ⅰ장에서 상술했다시피 '황제의 家僕'으로서 성경 상삼기 보오이들은 매년 황실에서 사용할 정액의 물품을 생산하고 납부하여야 했다. 장원이나 戶에 편성되지 않은 장정들에게도 빠짐없이 자질구레한 별도의 '차역(alban)'을 취했다. 이들의 차역 납부를 감독하는 '사무(baita)'를 맡은 바이탕가와 관원들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내고 물자 매매와 息銀 납부는 '황제의 가복'으로서 상삼기 보오이 모두가 응당 수행해야 했던 '차역', 또는 직관의 '사무'의 일환이었다고 생각된다.[61] 황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家僕의 노동력을 이용해 자산을 투자하는 '수익성 사업'에 다름없었다.

상인들은 자신의 몫으로 함께 차역을 면제받는 兼丁[kamciha]을 두 명까지 둘 수 있었다. 『盛京通志』에 정리된 성경 상삼기의 좌령하인 중에서 商人幇丁이 바로 이 겸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62] 겸정도 상인과 마찬가지로 기존 차역을 면제받는 대신 상인의 업무를 보조했을 것

---

60) 韋慶遠·吳奇衍·魯素,『淸代奴婢制度』,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2, p.102.

61) 내고 물자 매매가 기존에 내고 직관의 사무였다는 점, 자신을 포함하여 수 명의 장정의 차역을 면제받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혹 '상인'은 내고의 직관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大淸會典』 등의 관찬 사료는 내무부 상인을 직관으로 다루지 않는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黑圖檔』에서도 상인은 관원·바이탕가 등의 직관과 구분되어 병칭되었다. 차역 면제 또한 관원과 바이탕가만이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이 아니었다. 匠人들도 자신 몫의 차역을 면제받았다. 그렇다면 내무부 상인의 신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상인의 관리 방식'과 '승계 방식'을 다루는 다음 장에서 이어 찾도록 하겠다.

62)『盛京通志』乾隆 元年本, 卷9「苑囿」"三旗佐領下, 共壯丁四千二百一十九名, 除有職人員及養蜂採蜜捕魚打燒鴉燒瓦染皮及棉靛鹽鹹莊與商人幇丁等, 隨該管當差外, 餘丁一千一十八名, 每年紡線交庫, 採蘑菇葡萄蕨菜枸奶子頂進送."

이다. 사실상 선발된 13명의 상인과 그들의 겸정을 포함한, 총 약 40명이 내고 물자를 매매하고 본은을 경영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

시세대로 내고 물자를 매각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좋은 값에 구매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축적된 매매 경험이 필요했을 것이다. 더욱이 매년 소정의 息銀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위탁 매매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은을 자본 삼아 나름대로 자신의 사업을 경영해야 했겠다. 최종 선발된 상인 13명은 이러한 상업 활동을 하기에 준비된 사람들이었을까? 상인들과 그들에게 딸린 겸정들이 새로운 의무를 맡기 전,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 그 신원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총관내무부에서 제시한 상인의 지원 조건은 '가산이 제법 있고 명망 있는 사람'으로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인 지원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문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지원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지원한 사람들이 모두 상인으로 선발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 상인에 지원한 총 13명 중 6명은 '어떤 이유'로 인해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자리에 대체할 사람을 새로 선발하였다. 상인 지원자들과 최종 선발자의 명단을 분석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과 상인의 조건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처음 상인에 지원한 총 13명 중 9명의 신원은 총관내무부에 보내는 서신 내에 밝혀져 있다.[63]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기 庫吏, 모청포 최장·영최, 棉·靛莊 장두와 부자·형제·숙질 관계에 있었다. 서신에는 밝혀져 있지 않은 일부 지원자의 신원도 추정할 수 있다. 양황기 삼관보 니루의 정명귀가 상인으로 선발된 직후인 강희 11년(1672) 정월에서 팔월까지의 月摺檔을 보면, 1등 상인 정명귀는 수령한 본은 300냥에 대한 息銀을 정홍두, 정홍선과 함께 나누어 냈다.[64] 최종 상인 선발자 중에는 같은 니루에 소속된 정홍의도 있었는데, 그는 司庫 정명화의 아들이라고 서신 내에 신원이 밝혀져 있다.[65] 상인 정명귀와 司庫 정명화, 그리고 정

63) 『黑圖檔·康熙朝』 제11책, 126, pp.283-285, 강희 10년 정월 12일 京行檔.

64) 『黑圖檔·康熙朝』 제53책, 519, pp.373-385, 강희 11년 오월-십일월의 存查檔. 인용한 月摺檔은 성경 내고 내부에서 철마다 수취한 은량 수입을 기록한 장부로 추정된다.

65) 『黑圖檔·康熙朝』 제11책, 199, pp.322-334, 강희 10년 십일월 25일 京行檔.

홍두·정홍선과 상인 정홍의는 각기 성과 항렬자가 같을뿐더러 같은 니루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단서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정명귀는 司庫 정명화와 형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세 명의 신원을 밝힐 단서는 없지만, 이들은 모두 職에 없는 좌령하인이었으므로 표 1에서 정리한 '협의의 좌령하인' 중의 餘丁이거나 면·전·염장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10명의 신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들도 모청포 최장·영최 및 사고·고리의 근친이거나 면·전·염장 장두의 근친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표 3. 강희 10년(1671) 정월 1차 상인 지원자의 신원

소속		성명	신원
양황기	삼관보 니루	**정명귀**	
		왕우생	
		혜력삼	
정황기	오보이 니루	유영강	蓋州에 사는 棉莊 莊頭 유영진의 아우
		왕조선	蓋州에 사는 棉莊 莊頭 왕조빈의 아우
		정선등	蓋州에 사는 棉莊 莊頭 정선니의 아우
		곡양선	위찰둔에 사는 棉莊 莊頭 곡국빈의 아들
	이투 혼토호	**택광선**	庫吏 택광조의 형
정백기	신다리 니루	이문관	棉莊 莊頭 이국준의 아들
		무은상	靛莊 莊頭 무덕영의 아들
		김종당	모청포 짜기를 독촉하는 催長 김오의 손자
		마삼	
	니야하치 혼토호	**관세훈**	庫吏 관효생의 형의 아들

표 설명: 볼드체는 최종 선발된 인원, 회색 음영은 선발 논의 중에 사망한 인원.

상인 지원자와 친족 관계에 있던 관원과 바이탕가들은 모두 내고 소속의 직관이었다. 또 장원인 중에서도 내고의 관원이 관리한 면·전·염장인만 상인에 지원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66] 즉 문면에

66) 『盛京通志』 乾隆 元年本에 따르면, 당시 광저사 속하 삼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사고와 고리, 모청포 최장과 영최, 면·전·염장인은 모두 광저사 구성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는 드러나지 않지만, 상인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고 관원이 차역을 관리하는 장정으로 한정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애당초 내고 관원을 대신하여 내고 소관 사무를 수행할 사람을 뽑으려는 것이었던 만큼, 내고 관할 장정 중에서 지원자를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67]

표 3과 같은 상인 지원자 명단을 받아본 총관내무부는 정명귀, 왕우생, 혜력삼, 택광선, 김종당, 마삼, 관세훈은 니루와 혼토호의 閑散人[sula]이기 때문에 상인으로 선발하는 외에, 나머지 지원자들은 모두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탈락된 지원자들은 모두 면·전장인이었다.[68] 내무부에서는 장원의 생산을 우선시하여 잉여 장정 중에서만 상인을 선발하겠다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후 7인이 추가 신청하여 총 13명의 상인이 최종 선발되었다.[69] 추가 선발자 중 신원이 드러나는 사람은 3명뿐이다. 司庫 정명화의 아들 정홍의, 모청포 최장 원영규의 아들 원가유, 司庫 조삼의 아들 조위창으로, 모두 내고 직관의 친족이었다. 신원이 불분명한 4인도 두 번에 걸쳐 선발된 사람들의 신원을 고려할 때, 이들과 유사한 출신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70] 종합하자

商人	30	棉花莊 46처		染匠	138	催總	3
染丁	106	靛莊 11처		機匠		領催	15
司庫	3	鹽鹹莊 3처		彈匠		筆帖式	3
烏林人	10	莊頭	59	絃匠			
商人領催	3	壯丁	421				

67) 혹은 내고의 관원들이 상인 지원자 모집 소식을 내부에서만 유통하여 '상인' 자리를 근친들에게 독점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盛京城에서 약 2, 300리 떨어진 蓋州 등지에 사는 棉莊人도 상인에 지원하였기 때문에, 상인 지원자 모집 소식이 통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보다는 신분, 즉 수행하는 차역의 '終身性'이 성경 상삼기 보오이들의 주요한 속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고 소관 사무'는 '내고 관원이 관할하는 인원' 중에서 맡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68) 『黑圖檔·康熙朝』 제2책, 170, pp.361-364, 강희 10년 오월 초4일 京來檔.

69) 『黑圖檔·康熙朝』 제11책, 199, pp.332-334, 강희 10년 십일월 25일 京行檔; 제2책, 208, pp.397-398, 강희 10년 십이월 28일 京來檔.

선정이 불발된 상인 6명 외에도 상인에 선발되었지만 선발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어, 총 6명의 상인 내정자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70) 신원이 불분명한 4인 중 전양명은 강희 52년에 庫吏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전양호의 친족일 가능성이 있다. 야등귀도 순치 10년에 모청포 영최, 강희 12년에는 모청포 최장으로 있었던 야영장과 친족이지 않을까 추정해본다(『黑圖檔·康熙朝』 제22책, 292, pp.242-244, 강희 52년 구월 초8일 京行檔; 제9책, 248,

면, 강희 10년 두 차례에 걸쳐 최종적으로 상인에 선발된 사람들은 내고의 직관의 근친이었으리라 추정한다.

총관내무부의 비준을 얻어 선발되는 상인들과 달리, 商人幫丁은 상인들이 각기 선택할 수 있었다. 차역 면제는 큰 혜택인 데에다 함께 상업 활동을 할 만한 사람이라면 역시 가까운 친족 중에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상인방정이 상인의 가까운 친족이었으리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사례가 두 가지 있다. 먼저, 상술한 정명귀의 사례이다. 앞서 상인 정홍의의 아버지인 司庫 정명화와 상인 정명귀는 형제 관계였다고 추론하였다. 그렇다면 정홍의와 항렬자가 같은 정홍선과 정홍두는 상인 정명귀의 아들 또는 질자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명귀는 상인으로 선발된 직후 두 철의 息銀을 정홍선, 정홍두와 3분의 1씩 나누어 냈다. 息銀을 함께 납부하였다면, 아들이나 질자로 추정되는 정홍선과 정홍두가 정명귀의 상인방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보다 명확한 증거도 있다. 옹정 연간에 상인으로 활동한 왕보의 겸정인 왕용희와 왕용서가 그의 질자였음이 문서에서 확인된다.[71] 이러한 사례들에서 드러나듯이, 상인방정은 상당수가 상인의 가까운 친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상인과 마찬가지로 상인방정 또한 내고 직관의 근친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내고 직관의 근친인 이들은 상인 선발 이전에 어떤 차역에 종사하고 있었을까?[72] 상술했다시피 장원과 각종 戶에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餘丁들은 모두 일정한 차역을 부담해야 했다. 세 니루의 餘丁들에

---

pp.350-356, 강희 52년 구월 초8일 京行檔; 제12책, 58, pp.74-81, 강희 12년 팔월 초4일 京行檔 참조).

71) 『黑圖檔·雍正朝』 제3책, 270, pp.350-356, 옹정 3년 시월 16일 京行檔; 12책, 158, pp.191-192, 옹정 7년 십일월 16일 部來檔.

72) 선발 상인은 모두 니루와 혼토호의 閑散人[sula]이었다. 閑散人은 일반적으로 자리가 없어 官兵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기인을 일컫는다. 성경 상삼기 보오이의 경우, 현재까지 『黑圖檔』 문서를 확인한 바로는 바이탕가의 아들처럼 직관이 될 수 있는 신분이나 '직무[baita]'를 맡고 있지 않은 사람을 閑散人이라 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강희 14년의 대대적인 甲兵[uksin] 증설로 새로 갑병이 된 사람들을 보고할 때에 '니루의 차역 취하는 한산인 중 갑옷 입힌 자(nirui alban gaire sula urse dorgi be uksin etuburengge)'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閑散人에게도 차역을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인들은 표 1에 정리한 성경 상삼기 보오이 구성원 중 차역을 부담하는 '니루의 餘丁'이나 '신저쿠인'의 신분에 있었을 것이다.

게는 장정마다 한 해에 실 10근과 버섯, 목이, 말린 포도, 蕨菜를 징수하였다.[73] 혼토호의 신저쿠인 역시 면화 잣는 등의 차역을 부담하였다.[74] 상인과 상인방정 또한 본은 경영을 맡기 전 이러한 차역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75] 과거에 수행했던 차역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들에게 모두 풍부한 상업 경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내고 직관의 가까운 친족으로, 이들 중 일부는 상인이 되기 전에 겸정으로서 바이탕가의 직무를 도왔을 여지가 있다. 당초 상인이 두어지기 전에 내고의 매매 사무에 종사하던 것은 사고와 고리들이었다. 사고와 고리들이 신설된 순치 13년 이전에는 모청포 최장과 영최들이 축적된 면화와 소금 등의 물자를 매각하는 일을 맡았다.[76] 그러므로 일부 상인들이 그간 내고 바이탕가들의 업무를 보조하며 매매 경험을 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77] 그럴지라도 范氏 일가와 같은 일부 산서 상인 출신의 매매 경험에 견줄 바 아닌 것은 매한가지였다.

---

73) 『黑圖檔·康熙朝』 제3책, 85, pp.98-109, 강희 16년 팔월 초6일 京行檔.

74) 『黑圖檔·康熙朝』 제9책, 133, p.184, 강희 원년 이월 28일 京行檔.

75) 상술했다시피 상인 선발자는 모두 자원한 사람들이었다. 기존 차역에 비해서 상인으로서 맡게 될 의무가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가능한 선택이다. 기존에 맡은 차역은 '남은 차역'이라지만 부담이 결코 적지 않았다. 이들 餘丁이 왕에게 분배되거나 피갑·직관으로 선발되면 이전까지 그들이 맡았던 차역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또 '正差' 외에도 상당한 '另差'가 있었다. 물론 息銀 30냥 납부도 가볍지 않은 의무였음은 분명하다. 은량 납부로 차역을 져 직접 비교가 가능한 果園丁의 경우, 장정마다 매년 은 3냥을 냈다. 장정 3명 몫의 차역을 면제받는 것을 감안해도 상인 쪽의 부담이 훨씬 크다. 그러나 상인은 수령한 소정의 내고은을 상업 자본으로 삼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납부하는 은량 액수로 그 부담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76) 庫에 축적된 잉여 면화는 순치 9년부터 매각하기 시작하였다. 즉, 사고·고리의 신설 전에도 내고 물자를 매각하는 일이 있었다. 또, 강희 9년 삼월 초4일자 문서에 따르면, 모청포 최장과 영최들은 매매하는 일로 이날 표를 수령하였다. 상세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사고와 고리가 신설된 후에도 모청포 최장과 영최들이 매매하는 일이 있었음을 보여준다(『黑圖檔·康熙朝』 제18책, 128, pp.143-145, 강희 33년 십일월 22일 京行檔; 제53책, 407, p.303, 강희 9년 삼월 초4일 存查檔 참조).

77) 그동안 내고 물자의 매매를 전담해온 것은 내고의 사고와 고리들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신설 상인들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예컨대, 내무부 상인이 신설된 이듬해인 강희 11년 십일월, 상인 조위창의 아버지인 司庫 조삼이 福陵關領에 임명되어 福陵에 이주하게 되었다. 이에 조위창은 司庫인 아버지로부터 분가하여 장사하게 되면 '의지할 수가 없다'는 사유로 상인 자리에서 물러났다(『黑圖檔·康熙朝』, 제12책, 7, p.7, 강희 12년 정월 11일 京行檔 참조).

Ⅲ. 내무부 상인의 관리와 승계

1. 내무부 상인의 증원과 관리

아무리 단기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내고에서 수령한 소정의 은을 마음껏 운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상업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에게 매년 30%씩 息銀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이 영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은은 다름 아닌 '황제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임을 생각해본다면, 息銀이 제대로 납부되는지 감독하는 관리자가 따로 두어지지 않았을까 추론해보게 된다. 상인의 관리 방식을 살펴보는 일은 상인 제도 운영의 한 축을 밝힌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인의 신분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들의 의무 수행을 감독하는 직관이 두어졌다면, 이들의 의무는 다름 아닌 '차역'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이 방증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강희 10년 내무부 상인 제도 도입 이후의 주요한 변화상을 포착하여, 내무부 상인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관직이 설치되는 배경을 살펴보겠다.

강희 10년(1671)의 제도 도입 이후 강희 23년(1684)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내무부 상인 인원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78] 강희 11년 십이월에 상인을 그만둔 조위창의 자리는 정백기 니야하치 혼토호의 관세주가 채웠다.[79] 강희 22년에는 상인 정홍의의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그를 革退하고 그 자리에 같은 니루의 서등작을 상인으로 세우는 등의 소소한 인원 변동 사항만 있었을 뿐이었다.[80]

주목할 만한 큰 변화는 강희 24년에 있었다. 우선, 전해 유월에 정황기 니루·혼토호 소속의 열네 사람이 상인이 되고 싶다는 청원을 올리면서

78) 성경의 내무부 상인 인원 변동 사항은 매년 북경 총관내무부에 보고하는 庫銀 수입·지출 내역 보고서 중 息銀 수입 내역을 확인하여 파악할 수 있다(다음 절에서 詳述).

79) 관세주는 강희 10년에 상인으로 선발되었으나 그 소식이 전해지기도 전에 사망하였던 니야하치 혼토호 소속 庫吏 관효생의 질자인 관세훈의 동렬 친족으로 추정된다.

80) 『黑圖檔·康熙朝』 제14책, 157, pp.156-157, 강희 22년 이월 27일 京行檔.

상인 증원 논의가 점화되었다.

> 강희 10년에 상인을 신설할 때에 양황기, 정백기에 20명쯤 되는 상인을 두었습니다. 저희 정황기에는 상인이 없습니다. 앞서 本錢의 은을 맡긴 例가 있으므로, 저희 원컨대 息銀을 납부하고 100냥씩 本錢의 은을 맡고 싶습니다.[81]

강희 10년에 최종 선발된 상인들은 총 13명에, 정황기 이투 혼토호 소속 택광선이 상인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위의 청원 내용이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 지원할 적만 해도 양황기에서 3명, 정황기에서 5명, 정백기에서 5명이 명단에 올랐던 반면 최종적으로 선발된 상인은 양황기 소속 8명, 정황기 소속 1명, 정백기 소속 4명이었던지라 이 청원의 내용이 아주 틀린 말만도 아니었다. 또 같은 시기에 정백기 샹기투 니루 소속의 네 사람도 상인 자리에 지원하였다. 定例가 이미 마련되었던 덕에 1차 상인 선발 때와는 달리 곧바로 총관내무부의 비준을 얻어 지원자 모두 상인으로 세워졌다.[82] 1차 상인 선발 때와 또 하나 다른 것은 서신 내에 소속 니루·혼토호 정보 외에는 상인 지원자들의 신원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앞서 논증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廣儲司(內庫는 강희 16년 이후에 광저사로 개편됨) 소속 인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차례에 걸친 신·증설의 결과로 성경 광저사에는 총 31명의 상인들이 두어지게 되었다.[83]

---

81) 『黑圖檔·康熙朝』 제14책, 325, pp.342-343, 강희 23년 유월 19일 京行檔.
"elhe taifin i juwaci aniya hūdai niyalma sindarade kubuhe suwayan, gulu šanggiyan de orin isire hūdai niyalma sindaha. meni gulu suwayan de hūdai niyalma akū. neneme bencan i menggun jafabuha kooli bisirebe dahame, be cihangga madagan bume tanggūta yan i bencan i menggun jafaki."

82) 『黑圖檔·康熙朝』 제4책, 113, pp.189-191, 강희 23년 시월 28일 京來檔.

83) 엄밀히 말하자면, 2차 상인은 강희 23년 십이월 전에 선정이 완료되어 강희 23년 십이월부터 息銀을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강희 24년 이후로 기존 상인 13명에 증설 상인 18명을 합해 총 31명의 상인이 있어야 하나 실상은 총 33명의 상인이 활동하고 있었다. 31명의 상인 중 유일하게 본은 300냥을 맡았던 1등 상인 정명귀가 강희 23년에 사망한 후, 300냥을 모두 경영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 명이 각각 100냥씩 분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실상 강희 24년부터는 기존 상인 12명, 정명귀의 몫을 셋으로 나누어 가진 상인 3명, 24년의 증설 상인 18명을 더해 총 33명이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강희 49년 십이월에서야

증원된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강희 24년(1685) 팔월, 司庫들은 돌연 상인 영최(hūdai bošokū)를 신설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 성경 내무를 관장하는 관방 맡은 니루 장긴 삼관보 등이 총관내무부에 올리는 呈文. 상인 영최를 세우는 일.
> "司庫 관효생, 바하이, 전유성의 呈文. 例에 따라 영최 신설해달라는 일.
> **이전에 세 구사에 총 13명의 상인을 세운 것은 [상인들의 거주지가] 모두 [盛京]城 주변에서 가까워서 [저희가 이들에게] 업무를 전하고 虧欠한 息銀을 추징했었습니다. 지금 상인 18명을 증설한 까닭에, 총 상인 31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城에서 2, 3백 리 떨어진 蓋州, Lo Gu Dung 등지에 살기 때문에, [司庫 자신이 있는 곳과 상인 18명이 있는 곳의] 거리가 벌어져서 매우 멉니다.** 이 중에 虧欠한 息銀을 추징하기, 업무 전하기 등 사안에 전담토록 영최를 세우면 각종 사안이 지연되지 않는 데다가 어전(ejen)의 息銀도 虧欠되는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니루 장긴께서] 전해서신 보내서 마땅한지를 보고 상인 영최를 신설하여 각종 사안이 지연되지 않고 집행하기에 수월해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서신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보건대, **한 해 네 철의 息銀 추징하기, 해마다 庫의 사용하고 남은 면화, 쪽, 소금을 매각하기, 黑礬 등 [필요한] 물품을 잡다하게 구매하는 업무가 있는 데다가, 이후에 또 '청컨대 상업을 맡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얼마나 더]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사마다 영최 1명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황기의 장만록 니루의 甲兵인 장곡안을 으뜸(:1순위)으로, 삼관보 니루의 甲兵인 민종공을 버금(:2순위)으로 삼고, 정황기의 샹기투 니루의 甲兵인 곡양선을 으뜸으로, 장세진을 버금으로 삼고, 정백기의 버허너 니루의 甲兵인 오사보를 으뜸으로, 甲兵인 서조영을 버금으로 삼았습니다. 답신을 보내시면, 따라 집행하고자 합니다.[84] (강조는 인용자 표시)

밝혀졌다. 문서상에서는 강희 49년의 庫銀靑冊부터 해당 사실이 반영되어 이후 상인 33명으로 수정되었다. 상인의 업무를 도운 겸정까지 고려하면, 강희 24년 이후 상업 활동에 종사한 성경 상삼기 보오이는 약 100명에 달하였다. 이는 전체 인원수에 견주어 보아도 적지 않은 숫자였다(『黑圖檔·康熙朝』 제21책, 439, pp.372-373, 강희 49년 십이월 13일 京行檔 참조).

84) 『黑圖檔·康熙朝』 제15책, 150, pp.184-185, 강희 24년 팔월 초5일 京行檔.
"mukden i dorgi baita be kadalara guwan fang jafaha nirui janggin san guwan boo sei, dorgi baita be uheri kadalara yamun de aliburengge. hūdai bošokū sindara jalin. ulin i da guwan hiyo šeng, bahai, tiyan io ceng sei aliburengge. kooli songkoi bošokū sindaki sere jalin. neneme ilan gūsa uheri juwan ilan hūdai niyalma sindahangge. gemu hoton i šurdeme hanci ofi baita selgiyere,

이 청원의 내용을 통해 그간 매매 업무를 분담하고 息銀 납부를 독책하는 등의 상인 관리는 司庫가 맡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상인들의 의무 수행을 독책하는 관리가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 나온 것이지만, 이보다 먼저 눈길을 끌어당기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상인 관리를 전담할 별도의 職인 상인 영최를 신설해달라는 司庫의 이번 청원은 다름 아닌 1차 상인과 2차 상인의 거주지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司庫들의 말에 따르면 기존 상인들은 盛京城 주변에 거주하였던 반면, 증원된 상인들은 모두 성에서 2, 3백 리 이상 떨어진 蓋州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처럼 1차 상인과 2차 상인들의 거주지가 크게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희 24년의 2차 상인 중에는 1차 상인 선발 당시에 퇴짜 맞았던 棉·靛·鹽莊人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2차 상인 중에 장원의 장정[莊丁] 출신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강희 24년에 本銀을 수령한 정백기 샹기투 니루의 동유광은 강희 39년 칠월에 질병을 사유로 革退를 요청하였다. 다음 절에서 詳述할 상인 革退의 例에 따라, 관할 좌령인 샹기투와 驍騎校(funde bošokū, 강희 17년 첨설)는 곧바로 동유광이 소유한 재산을 조사하였다. 동유광은 장정 한 명과 장원에 기와집 세 칸을 소유하고 있었다.[85]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장원에 집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

edelehe madagan i menggun be bošome gaimbihe. te geli juwan jakūn hūdai niyalma nonggime sindara jakade, uheri gūsin emu hūdai niyalma ohobi. ese gemu hoton ci juwe ilan tanggū bai dubede g'aiju, lo gu dung ni jergi bade tehe be dahame, sandalabufi umesi goro. erei dorgi edelehe madagan i menggun be bošoro, baita selgiyere jergi baita de cohome bošokū sindara oci yaya baita tookaburakū bime ejen i madagan i menggun inu edelere ba akū ombi. uttu be dahame ulame yabubufi acarabe tuwame hūdai bošokū sindafi yaya baita de tookaburakū yabuburede ja obureo seme bithe alibuhabi. be tuwaci, emu aniya duin forgon i madagan i menggun bošome gaijara, aniyadari kui baitalafi funcehe kubun, lan, dabsun be uncara, hoifan i jergi jaka be buyarame udara baita bimbime, ereci amasi geli cihanggai hūda jafaki sere urse bisire be boljoci ojorakū. uttu be dahame gūsa tome bošokū emte sindaki sembi. uttu ofi kubuhe suwayan i jang wan lu nirui uksin jang g'o an be cohome, san guwan boo nirui uksin min dzung gung be adabume, gulu suwayan i šanggitu nirui uksin sioi coo yung be adabuhabi. erebe amasi unggihe manggi, dahame yabuki sembi."

85) 『黑圖檔·康熙朝』 제6책, 261, pp.354-357, 강희 39년 시월 29일 京來檔.

미루어 보아 동유광은 상인 선발 전까지 장원에서 생산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으리라 추정된다.

한편, 내고의 관원과 바이탕가들과 달리 莊丁은 성경성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司庫와 庫吏가 윤번으로 개폐 및 물자 출납을 감독하던 財庫는 상술했다시피 성경성의 大淸門 내에 위치하였다. 모청포 최장과 영최가 관리하는 3庫는 본래 대청문 밖에 있었으나 순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치 연간에 성경성 내로 이전된 바 있었다.[86] 나날이 내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들 관원과 바이탕가는 각 庫의 근방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들과 형제·부자·백질 관계에 있었던 1차 상인들 역시 성경성 주변에서 거주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인용한 문서에서 기존 상인 13명은 모두 성경성 가까이 거주한다고 언급한 것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와 달리, 莊丁은 각기 장원이 위치한 지역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차 상인 지원자 중 면장 장두의 가족은 다수가 蓋平界의 蓋州에 거주하고 있었다. 『欽定盛京通志』에 따르면, 당시 광저사 관할의 棉莊 35처 중 4처는 遼陽界, 7처는 海城界, 13처는 蓋平界, 1처는 熊嶽界에 있었다. 靛莊 6처 중 절반이 承德界, 나머지 절반이 遼陽界에 위치하였다. 鹽莊은 海城界에 2처, 蓋平界에 1처가 있었다.[87] 그렇다면 성경성 근처에 거주하는 莊丁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 청원 문서에서 '증설한 상인이 모두 성경성에서 2, 3백 리 떨어진 蓋州 등지에서 거주합니다'고 한 것은 2차 상인들 대다수가 莊丁 출신이었음을 방증한다.[88]

거주지가 곧 신원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강희 24년의 2차 상인 중에

---

86) 『黑圖檔·康熙朝』 제12책, 58, pp.74-81, 강희 12년 팔월 초4일 京行檔.

87) 『欽定盛京通志』 乾隆 44年本, 卷38 「田賦2」 "廣儲司所屬三旗織造庫, 棉花莊頭十五處, 莊頭四十五名內, 遼陽界四處海城界七處, 蓋平界十三處, 熊嶽界一處, 靛莊六處, 莊頭十一名內, 承德界三處, 遼陽界三處, 鹽莊三處, 莊頭三名內, 海城界二處, 蓋平界一處, 城莊一處, 在熊嶽界莊頭一名."

88) 상인으로 선발된 莊丁은 1차 지원 시와 마찬가지로 모두 면·전·염장의 구성원 중에서도 비교적 지위가 높은 장두의 자손이나 형제에 국한되었을 것이다. 이들도 광저사(내고)의 관할 하에 생산물을 납부하는 차역을 담당하던 상업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는 1차 상인들의 성격과 거의 유사하다.

莊丁 출신이 있음을 논증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다. 앞서 소개한 양황기 가다훈 니루의 상인 왕보는 息銀 납부에 어려움을 겪다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강희 57년(1718)에 개주성에서 서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 상점을 열었다.[89] 개점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옹정 3년(1725), 소유한 모든 가산을 처분해도 그간 체납한 內庫銀을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성경 장관방좌령은 조카이자 겸정이었던 왕용희가 소유한 개주의 상점 17칸으로 압류하여 변제시켰다.[90] 이러한 단서들로 미루어 보아, 상인 왕보는 개주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棉莊의 장정 출신이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강희 10년(1671)의 1차 상인과 강희 24년(1685)의 2차 상인 간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莊丁을 상인으로 세우느냐의 여부에 있었다.[91] 莊丁 출신의 상인은 성경성에서 2, 300리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성경성 근방에 거주하는 司庫가 이전처럼 업무를 지시하고 息銀 납부를 독책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관리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해당 사무를 전담할 직관인 상인 영최가 신설된 것이었다.[92]

---

89) 『黑圖檔·康熙朝』 제52책, 40, pp.19-20, 강희 57년 팔월 29일 存查檔.

90) 『黑圖檔·雍正朝』 제3책, 270, pp.350-356, 옹정 3년 시월 16일 京行檔.

91) 장원에서의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인 지원 신청이 반려되었던 1차 선발 때와 달리, 이번에 지원한 棉·靛莊人들은 상인으로 발탁된 경위가 무척 궁금해진다. 이들의 신원은 본문에서의 논증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애초에 북경 총관내무부에서 받아본 상인 지원자 명단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 따로 지원자들의 인적 사항 보고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인준한 것으로 보아, 북경 총관내무부에서는 이러한 신원 차이를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새로운 제도를 하나하나 논의하며 정립해나가야 했던 강희 10년의 상인 신설 당시와 다르게, 定例가 이미 마련된 강희 23년의 증원 때에는 그 세부 사항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주고받은 서신 내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함께, 지원자의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십여 년 전과 달리, 강희 23년에는 내고 관원과 바이탕가들의 친족이 상인 지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 같다. 애초에 내고 직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 상인에 지원할 법한 가족은 이미 기존 상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수 있다. 더욱이, 강희 14년(1675)에는 三藩의 난의 영향으로 성경 상삼기 보오이 중에서도 총 600명의 갑병[uksin]을 새로 선발하였다. 이중 閑散人[sula] 출신은 141명으로, 아무런 직을 맡지 않은 내고 관원과 바이탕가들의 근친이 남아 있었다면 이때 갑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佟永功·關嘉祿, 「盛京上三旗包衣佐領述略」, 『歷史檔案』, 1992(3), p.94 참조).

상인 영최는 각 구사에 1명씩, 총 3명이 선발되었다. 다른 바이탕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甲兵[uksin] 중에서 선발하여 영최의 일을 겸하게 하였다. 상인 영최 직을 승계할 후보자 명단을 보고하는 문서 중에 명시된 상인 영최의 직무는 다음과 같았다. ①상인들의 息銀 납부를 독촉하기, ②성경 내무 기구 소유의 점포 임대료를 징수하기, ③북경에 보낼 각종 모피를 구매하고 내고의 잉여 면화, 쪽, 소금을 매각하기였다.[93] 이같이 상인 영최가 수행하는 일은 장정들에게 생산량을 할당하고 납부를 독촉하는 다른 영최들의 사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이 이처럼 지속적인 관리자의 督責 아래에 있었다면, 그들이 수행하던 일도 '차역'의 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겠다.

---

92) 司庫들이 상인 영최 직을 따로 신설하기를 요청한 사유는 표면상 '증설된 상인들의 거주지가 너무 멀다'는 것이었지만, 이 요청에는 다른 속내가 있었을 수도 있다. 제 Ⅱ장에서 논증했다시피 강희 10년에 신설된 상인들 중 다수가 司庫·庫吏와 부자·형제 관계에 있었다. 상인 독책 의무를 진 司庫들이 근친 관계에 있는 상인들의 息銀 납부를 철저하게 관리했을지 의심스럽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매년 정월 총관내무부에 올린 내고은 수입·지출 내역 보고서에 기재된 수입 항목 중 息銀 액수는 다른 항목과 달리 實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장부상 수치와 달리 실제로는 상인들의 息銀 虧欠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靑冊 작성을 담당한 司庫·庫吏과 상인의 관계 때문에 이러한 조작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증설된 상인들은 모두 면·전·염장인으로 추정되므로 司庫가 이들을 관장함으로써 얻을 이득은 하등 없었다.

93) 『黑圖檔·康熙朝』 제20책, 141, pp.130-132, 강희 42년 삼월 24일 京行檔.
"erin akū esei madagan i menggun be bošoro, puseli i turigen be gaire, ging hecen de benere suwa buhū sukū, fulgiyaci buhū sukū udara, ku i baitalafi funcehe kubun, lan, dabsun uncara jergi baita de holbobuhangge umesi ujen amba be dahame, tookabure sartabure oci mini alime muterengge."

2. 내무부 '상인결'의 승계 방식

한편, 선발된 상인들이 언제까지나 本銀을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맡은 일을 수행하기가 힘에 부치는 날이 오기 마련이었다. 더군다나 수십 년 동안 息銀을 체납분 없이 낼 수 있도록 개인 사업을 꾸준히 잘 영위하기도 퍽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미 앞 절에서 질병과 가세 몰락으로 息銀을 납부할 수 없게 된 사례를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상인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그전에 먼저 강희 24년(1685) 이후 성경의 내무부 상인 인원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1명의 인원수(강희 49년 이후 33명)를 반드시 채워야 할 필요가 없다면, 물러나기를 원하는 상인에게 本銀을 돌려받고 息銀까지 체납한 상황에는 家産을 추징하면 될 일이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총관내무부에 呈文을 올릴 만한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문서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매해 성경의 내무부 상인 명단을 확인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內庫銀의 수입·지출 상황은 연말에 계산하여 매년 정월에 총관내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착안하여 내고은의 수입·지출 내역 보고서의 息銀 수입을 분석하면 상인 인원수의 변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표 4 참조).

표 4에 따르면 강희 24년부터 강희 말년에 이르기까지 內庫에는 매년 息銀 990냥이 들어왔다. 이는 강희 24년의 증원 이후로 상인들의 인원수가 줄곧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94] 즉, 성경의 내무부 상인은 定數가 있

94)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수입·지출 내역 보고서에 기록된 息銀 수입 액수는 다른 수입원과 달리 실제 수취한 액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강희 12년의 月摺檔을 보면, 강희 11년 십이월 부로 조위창이 革退되고 12년 유월에 관세주가 승계하여 息銀을 납부하기 전까지 6개월 분의 息銀이 수취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후 상인 革退와 승계 과정에서 상당액의 息銀을 거두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수 있다. 또, 제 Ⅳ장 2절에서 살펴볼 강희 33년의 內庫 存銀 활용 방안 논의 과정에서 성경 장관방좌령은 총관내무부의 요구로 內庫 설립 이래의 고은 수입·지출 총 내역을 보고하였다. 빠짐없이 息銀이 납부되었다면 강희 33년까지 징수한 액수는 총 15,810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보고에 따르면, 강희 10년 이래 상인에게 수취한 息銀은 총 14,382.5냥이었다. 따라서 당책에는 반영되지 않은 虧欠이나 수취 누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黑圖檔·康熙朝』 제53책, 519, pp.373-385, 강희 12년의 存査檔; 제18책, pp.143-145, 강희 33년 십일월

는 일종의 '缺'이었다고 판단된다.[95] 후술할 택광영과 동유광의 사례에서 질병이나 가세 몰락으로 본은을 경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은 후에야 상인을 그만둘 수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 4. 강희 11년(1672)-57년(1718)의 息銀 수입 내역

연도	收入	연도	收入	연도	收入	연도	收入
강희 11년①	450	강희 24년	990	강희 35년	990	강희 47년	990
강희 13년②	450	강희 25년	990	강희 36년	990	강희 48년	990
강희 14년	450	강희 26년	990	강희 37년	990	강희 49년	990
강희 16년	450	강희 27년	990	강희 38년	990	강희 50년	990
강희 17년	450	강희 28년	990	강희 39년	990	강희 51년	990
강희 18년	450	강희 29년	990	강희 40년	990	강희 52년	990
강희 19년	450	강희 30년	990	강희 41년	990	강희 53년	990
강희 20년	450	강희 31년	990	강희 42년④	990	강희 54년	990
강희 21년	450	강희 32년	990	강희 44년	990	강희 55년	990
강희 22년	450	강희 33년	990	강희 45년	990	강희 56년	990
강희 23년③	495	강희 34년	990	강희 46년	990	강희 57년	990

(단위: 兩)

① 상인 조위창이 본은 100냥 반납 ② 강희 13년의 內庫收支靑冊 失傳
③ 신설 상인 18명에게 息銀 45냥(1개월분) 수취 ④ 강희 43년의 內庫收支靑冊 失傳

그렇다면 성경의 내무부 상인결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승계되었을까? 商人缺의 승계 원리는 내무부 상인의 신분을 이해하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하다. 성경 내무 기구 내에서 '缺'을 승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품급과 경력을 따진 진급이 하나, 친족 계승이 다른 하나이다. 우선 관원과 바이탕가의 경우에는 전자의 방식으로 후임자가 선발되었다. 司庫와 같은 관원 자리는 庫吏와 모청포 최장, 영최와 같이 동일 기구에 소속된 바이탕가 중에서 경력과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승계하였다. 경력

22일 京行檔 참조).

95) '商人缺'이라는 어휘는 후대의 편찬 사료에도 등장한다. 光緖朝의 『盛京通典備考』에서도 "상인결이 나오면 해당 기에서 殷實한 사람을 가려 뽑아 補放한다(如商人缺出, 由該旗揀選殷實人家頂補)."고 하여 당시에도 하나의 缺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 업무 평가를 바탕으로 순위를 정해 몇 명의 후보 명단을 총관내무부에 보내면, 총관내무부 산하 소관 기구의 郎中들이 적임자를 논의하였다. 내무부 대신의 비준을 얻으면 비로소 전임자의 뒤를 이을 수 있었다[96]. 직관의 첫 시작인 가장 말단 바이탕가의 자리에는 700명에 가까운 거대한 甲兵 집단에서 근면한 사람을 뽑아 세웠다. 이들은 장정들의 생산과 납부를 독려하고 책임지는 관리자였던 만큼,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97] 이와 달리, 면·전·염장과 양장의 莊頭 자리는 전임 장두의 장자나 장손이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장두에게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나 친족 중 장원을 관리할 능력 있는 사람이 승계하도록 하였다.[98] 매년 납부해야 할 정액의 생산물을 체납하여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체납액을 대신 납부하는 장원의 장정이 장두직을 이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99]

상인 승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강희 37년(1698) 이후의 일이었다. 정황기 시라 니루의 상인 최고송은 최근 몇 년을 연달아 곡식을 수확하지 못한 까닭에 식량 구입에 상업 자본을 탕진해버렸다는 사유로 상인 革退를 요청하였다.[100] 이번이 처음 있는 상인의 革退 요청은 아니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상인 지원자를 곧바로 구할 수 있었던 강희 11년의 조위창, 강희 22년의 정홍의의 사례와 달리,

---

96) 『黑圖檔·康熙朝』 제2책, 28, pp.39-41, 강희 7년 유월 12일 京來檔.

97) 관원과 바이탕가의 경우 오히려 친족 계승이 지양되었다. 강희 원년 삼월에 6品 司庫 왕서화는 노환을 사유로 革退를 요청하는 동시에, 자신의 장자로 하여금 계승하게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총관내무부에서는 司庫의 직은 관원[hafan]의 급에 있으므로 경솔하게 세울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경력이 오래되고 직무 수행 능력이 훌륭한 사람 중에서 1순위와 2순위를 뽑아 보고하라고 요구하였다. (『黑圖檔·康熙朝』 제9책, 136, pp.186-187, 강희 원년 삼월 16일 京行檔; 제9책, 139, pp.189-190, 강희 원년 오월 초2일 京行檔 참조)

98) 王萍, 「淸康雍乾時期盛京皇莊硏究」,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p.17.

99) 장두의 임면 원리는 關克笑, 「盛京內務府棉莊」, 『社會科學輯刊』 63, 1989(4), pp.99-103; 佟永功·關嘉祿, 「盛京內務府糧莊述要」, 『歷史檔案』, 1995(2); 魏鑒勛·關嘉祿, 「康熙朝盛京內務府皇莊的管理」, 『故宮博物院院刊』, 1984(2) 참조.

100) 실제로 강희 32, 33, 34년에는 연달아 재해를 크게 입어 성경 회계사 소속 양장에서도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할당된 곡식을 완납하지 못하였다(「淸代盛京內務府滿文檔案選譯(五)」, 何榮偉·張虹·馮璐·田媛媛 譯, 『滿族硏究』 126, 2017(1), 3-13번 당안 참조).

상인결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동일 사안을 처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 장관방좌령은 총관내무부에 革退의 例를 문의하였다.[101] 이에 총관내무부에서 답변해온 革退의 例는 다음과 같았다.

> 살펴보건대 **우리 司(:북경 광저사)의 상인 중에 집안이 가난하여 [본은의] 경영을 맡을 수 없는 자 있으면**, 該管 니루 장긴, 보오이 다가 각기 '니루, 혼토호의 상인 某, 집 매우 가난합니다. 경영 맡을 수 없습니다.'라고 관원들에게 보고해서 우리 司에 보고하러 오면, 우리 司는 該管 니루 장긴, 보오이 다에게 재차 맡겨서 '너희의 니루·혼토호의 상인이 몇 년 [동안] 경영 맡았는지, 사는 집은 몇 칸인지, 丁田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어찌하여 가난하게 되었는지, **[그] 자리(缺)에 [이어서] 경영을 맡을 형제들, 아들들을 엄격히 조사해서 보내오라.**'라고 맡겨서 조사시킵니다. 該管 니루 장긴, 보오이 다가 엄밀하고 분명하게 '상인 某, 사는 집 若干 칸, 田地 若干 있다. 혹은 집, 전지 모두 없다. 某 년에 상업 맡았다. 某, 某 등 일로 가난해졌다. **이 자리에 경영 맡을 수 있는 형제들, 아들들 없다'라고 분명히 조사하고 보증해서 알리러 오면, 대신들에게 靑冊을 올려서, 본은을 회수하여서 상인에서 革退합니다. [그렇지만] 이 例는 定例가 아닙니다. 진실로 가난하고 자리에 [이어] 경영 맡을 사람이 없으면 酌量해서 처리합니다.**[102] (강조는 인용자 추가)

---

101) 『黑圖檔·康熙朝』 제19책, 33, pp.37-38, 강희 37년 사월 30일 京行檔.

102) 『黑圖檔·康熙朝』 제6책, 323, pp.294-295, 강희 27년 구월 29일 京來檔.
"baicaci meni sy i hūdai niyalma i dorgi boo yadambi. hūda jafame muterakūngge bici harangga kadalara nirui janggin, booi da meni meni niru hontohoi hūdai niyalma tere, boo umesi yadambi. hūda jafame muterakū seme, ambasa de alafi, meni syde alanjiha manggi, meni sy harangga kadalara nirui janggin, booi da de dasame afabufi suweni nirui, hontohoi hūdai niyalma tere ya aniya hūda jafaha, tehe boo udu giyan, udu hahai usin bi, te adarame yadahūn oho, oronde hūda jafara ahūta, deote, juse be ciralame baicafi benju seme afabufi baicabumbi. harangga kadalara nirui janggin, booi da ciralame getukeleme hūdai niyalma tere, tehe boo tuttu giyan, usin tuttu bi. aici boo, usin gemu akū. tere aniya hūda jafaha. tere, tere jergi baita de yadahūn oho. erei oronde hūda jafame mutere ahūta, deote, juse akū seme, getukeleme baicafi akdulafi alanjiha manggi, ambasa de cengdzi alibufi, da beyei menggun be bargiyafi, hūdai niyalma ci nakabumbi. ere kooli, toktobuha kooli waka. yargiyan i yadara, oronde hūda jafara niyalma akū oci, acara be tuwame icihiyambi."

인용문에 따르면, 그동안 북경의 광저사에서는 가세 몰락으로 본은을 경영할 수 없다는 사유로 상인이 革退 요청을 해오면 우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하는 좌령·관령에게 가산 상황과 자리를 계승할 친족의 유무를 확인하게 하였다. 이처럼 철저히 재산 상황을 조사한 이유는 息銀 미납 시에 가산으로 충당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동안 북경에서는 상인을 그만두기 위해 거짓 사유를 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상인 자리는 형제나 자손이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이 확인된다. 본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면 관할 관원의 보증하에 본은을 회수하고 革退하였다.

상인을 그만두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북경과 달리, 성경에서는 상인결을 채울 후임자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息銀 납부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만둘 수 없었다. 택광영과 동유광의 사례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강희 39년, 정황기 손유 니루의 택광영과 정백기 조색 니루의 상인 동유광이 병환으로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息銀 납부가 어렵다는 사유로 상인에서 革退되기를 요청하였다. 두 사람에게는 상인결을 계승할 형제와 자손이 모두 없었다. 북경 광저사의 경우였더라면 곧바로 요청이 수리되었을 조건이었지만 성경의 경우는 달랐다. 아래의 인용문처럼 후임자를 찾으라는 요구는 네 해가 되도록 계속되었다. 그 사이에 택광영과 동유광이 상인으로서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했음은 물론이었다.

> "경성의 例에서 상인들 [중] 가난하여 경영 맡을 수 없다는 자를 靑冊(:그 명단) 올리고서 반년을 기한으로 세워서 本銀을 庫에 넘깁니다. 지금 니루 장긴 조색 등의 呈文대로 상인 택광영, 동유광이 맡은 本銀을 마찬가지로 반년으로 기한 정해서 그들의 庫에 넘기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함에 대신들의 말씀, "**이들을 革退하면 상인들이 감소한다. 반드시 세 니루 내에서 조사해서 경영 맡을 두 사람을 얻은 후에, 다시 呈文을 올리고서 革退시켜라.**" 하셨다.[103]

---

103) 『黑圖檔·康熙朝』 제7책, 79, pp.120-126, 강희 41년 시월 초4일 京來檔.
"ging hecen i kooli de hūdai urse yadambi hūda jafame muterakūngge be cengdzi alibufi hontohoi aniya bilagan bilafi da beyei menggun be kude

그 사이에 상인결의 승계자 탐색 범위는 점차 확장되었다. 우선, 원칙적으로 상인결을 계승해야 하는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관할 좌령, 효기교, 창장 등이 보증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어 아들이나 손자, 형제뿐만 아니라 촌수가 떨어지는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하였다. 동시에 니루와 혼토호의 사람들 중에서도 적임자를 물색하였다.[104] 이 같은 과정을 정리하자면, 성경의 내무부 상인결은 친족 계승을 원칙으로 하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좌·관령하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승계되었다.[105] 이러한 승계 원리는 상술한 직관의 승계 원리와 장두의 승계 원리 중 후자에 가깝다.

제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내무부 상인은 내고 관원과 바이탕가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를 분담하기 위해 두어졌다. 기구마다 定額이 있었던 직관과 마찬가지로 定額의 상인결이 두어졌다. 이러한 면만 곱씹어 보면, 혹 내무부 상인은 직관의 일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품급과 경력을 따져 진급하는 관원·바이탕가의 官缺와 달리, 상인결은 친족 간에 계승되었다. 각 바이탕가들은 능력에 따라 有品 관원으로 진급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성경의 내무부 상인이 관직에 오른 사례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전 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내무부 상인은 다른 장정들과 마찬가지로 관할 바이탕가의 督責 하에 놓여

---

afabumbi. te nirui janggin tiyoose sei alibuha songkoi hūdai niyalma dze guwang yung, tung io guwang ni jafaha da beyei menggun be inu hontohoi aniya bilagan bilafi ceni kude afabukini sembi seme alahade ambasai gisun esebe nakabuci hūdai urse ekiyembi. urunakū ilan nirui dorgi baicafi hūdai jafara juwe niyalma baha manggi, jai alibufi nakakini sehe."

104) 이 과정은 강희 39년 칠월부터 강희 42년 이월에 걸친 8건의 왕복 문서에 보인다. 다만, 일부 사료가 현전하지 않아 논의의 결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黑圖檔·康熙朝』 제19책, 270, pp.326-327, 강희 39년 칠월 25일 京行檔; 제6책, 261, pp.354-357, 강희 39년 시월 29일 京來檔; 19책, 305, pp.347-349, 강희 39년 십일월 초5일 京行檔; 제6책, 273, pp.375-378, 강희 39년 십이월 30일 京來檔; 제20책, 64, pp.65-69, 강희 40년 구월 초6일 京行檔; 제7책, 56, pp.92-96, 강희 41년 오월 초4일 京來檔; 제7책, 79, pp.120-129, 강희 41년 시월 초4일 京來檔; 제20책, 121, pp.109-111, 강희 42년 이월 초6일 京行檔 참조).

105) 상술한 상인 왕보 사례에 따르면, 왕보가 상인에서 革退된 뒤 그 자리는 왕보의 조카이자 겸정이었던 왕용희가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상인의 친족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자리를 승계한 상인은 전임자와 함께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일 개연성이 매우 크다.

있었다. 이 같은 승계 원리와 관리 방식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성경의 내무부 상인의 신분은 성경 내무 기구 내에서 '차역(alban)'을 수행하는 다른 장정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훗날의 일이지만, 상인결을 승계할 자손이 없어 本銀을 반납하고 싶다는 사유로 올린 건륭 34년(1769) 자의 한 문서에는 상인의 업무가 다름 아닌 '차역(alban)'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있다.

> 불운하게도 제 주인인 완덕량 부부가 모두 병들어 죽었습니다. 전혀 자식이 지금 없습니다. **상인의 '차역(alban)'을 맡아서** 수행할 사람이 없으므로, 청컨대 제 주인인 완덕량이 원래 수령한 본은 100냥을 반납하고 싶습니다.[106] (강조는 인용자 추가)

제 Ⅰ장에서부터 제 Ⅲ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도입된 내무부 상인 제도의 내용과 운영 양태를 다각도에서 조망하며 도출한 결론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내무부 상인의 업무를 '차역(alban)'이라고 인지했다는 것만큼 내무부 상인의 신분 규명에 쐐기를 박아주는 증거는 없을 듯하다. 얼핏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더라도 승계자를 찾을 때까지 그만둘 수 없었던 내무부 상인 신분의 '終身性'은 바로 이들의 상업 활동이 황제의 노복인 '上三旗 보오이'로서 부과받은 일종의 '차역'인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106) 『乾隆朝·黑圖檔』 제17책, 238, pp.271-272, 건륭 34년 칠월 27일 京行檔.
"kesi akū ofi, mini ejen wan de liyang eigen sargan yooni nimeme akū ohobi. umai ne juse akv. hūdai niyalma i alban be alifi icihiyara niyalma akū be dahame, bahaci meni ejen wan de liyang ni da alime gaiha beye menggun emu tanggū yan be amasi afabuki."

Ⅳ. 내무부 상인의 활동과 재정 기여

1. 내무부 상인의 상업 활동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내무부 상인이 부과받은 차역(alban)은 크게 두 가지, '내고 물자 매각 및 수요품 구매'와 '本銀 경영을 통한 息銀 납부'였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이러한 차역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다. 먼저, 내무부 상인들이 내고에 축적된 잉여 물자를 매각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실례가 있다.

> 성경 내무를 관장하는 니루 장긴 등의 咨文. 성경 兵部에 보낸다.
> 정황기의 本銀 수령한 상인 任京宣의 呈文. 出邊執照 발급을 청하는 일.
> "**저에게 매각하도록 위탁한 內庫의 면화**를, 저 기린 울라에 가지고 가서 교역하여 팔고 싶습니다. (중략) 出邊執照를 발급해주십시오." 라고 올렸다.[107] (강조는 인용자 추가)

성경 지방을 둘러싼 柳條邊을 나가 기린 울라, 부트하이 울라와 같은 邊外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성경 兵部로부터 출변 허가증[出邊執照]을 받아야만 하였다.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의 경우, 성경 장관방좌령에게 허가증 발급을 요청하는 呈文을 올리면 장관방좌령이 성경 병부에 咨文을 보내 처리하였다. 허가증을 요청할 시에는 출변 목적 및 동행인과 牛馬의 수 등을 분명히 밝혀 제출해야 하였다. 일부 현전하는 출변 허가증 요청 문서를 통해,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이 실제로 內庫의 잉여 면화, 소금 등의 물자를 매각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상인 인원의 변동 양상을 추적하기 위해 살펴본 내고은의 수입·

---

107) 『黑圖檔·康熙朝』 제48책, 512, pp.355-356, 강희 47년 칠월 19일 部行檔.
"mukden i dorgi baita be kadalara nirui janggin sei bithe. mukden i coohai jurgan de unggihe. gulu šanggiyan i bencan i menggun jafaha hūdai niyalma in jing siūn i alibuhangge. jase tucibure bithe bahabure be baire jalin, mimbe unca seme afabuha dorgi ku i kubun be, bi girin i ula de gamafi hūdašame uncaki. (중략) jase tucibure bithe bureo seme alibuhabi."

지출 내역에서 확인되듯이, 息銀도 매년 납부되고 있었다. 매년 각 30냥의 息銀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내고은과 개인 자산을 운용하여 나름대로 상업 활동에 종사해야 했을 터이다. 내고 물자를 매각하는 일은 관할 관원인 司庫나 상인 영최가 각 상인에게 할당량을 부과하였지만, 息銀 납부를 위한 상업 활동은 온전히 상인 개인의 선택과 역량에 맡겨졌다. 이 같은 개별적인 상업 활동에는 개인 자산을 증식시키려는 목적도 물론 없었다고 볼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息銀 납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라는 점에서 '차역'의 확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쉽게도 기구에서 발생하는 '행정 문제'를 처리한 당안의 성격상 이들의 개별적인 상업 활동을 면밀하게 고증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邊外 지역 사람과 교역하기 위해서는 출변 허가증[出邊執照]을 요청·수령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출변 허가증 요청 문서에 밝힌 정보 덕분에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이들의 행선지와 교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상업 활동 중에 여러 아문들이 개입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간 당안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이들의 기존 활동상이 포착되기 마련이었다. 강희 45년(1706)의 '양사원의 布銀 虧欠 사건'과 강희 46년(1707)에 발생한 조선 교역권을 둔 欄頭와의 분쟁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의 상업 활동 영역과 방식을 밝힐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노출된다. 이 절에서는 이렇게 추출한 상인들의 상업 활동 양태를 試論적으로나마 해명하려 한다.

강희 47년, 내무부 상인 네 명은 각기 부트하이 울라와 기린 울라에 가서 이전에 울라인에게 판매한 물품의 외상값을 받아오기 위해 출변 허가증을 요청하였다. 앞서 인용하였던 정황기 상인 임경선의 사례도 이 중 하나였다.

> 양황기의 본은 맡은 상인 최봉래의 呈文. (중략) 저는 작년에 제 상품을 기린 울라에 가지고 가서 남에게 외상으로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재차 면화, 포, 소금 등의 상품을 가지고 가서 전에 꿔준[외상 준] 값의 은을 함께 추징해와서 제가 虧欠한 官에 들어가게 될 內庫의 은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최봉래, 저의 패

에 사람이 15명, 수레에 메는 말과 노새가 45마리입니다.[108]

正黃旗의 포론 니루의 본은 맡은 상인 송조영의 呈文. (중략) 제가 맡은 本銀과 대출받은 內庫銀을, 제가 부트하이 울라(打生烏拉)에 가지고 가서 장사하는데, 商品을 주히얀인 가하나 등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주었습니다. 저 지금 또 布, 누룩, 席, 종이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전에 [상품] 준 묵은 [외상]값을 함께 추징해 가져와서 虧欠한 內庫銀에 상환하고자 합니다. 송조영, 저의 패에 사람이 14명, 탈 말이 8마리, 수레 8대, 수레 끌 소가 12마리, 말이 4마리입니다.[109]

정황기의 포론 니루의 본은 수령한 상인 李茂俊의 呈文. (중략) 제가 맡은 본은과 대출받은 내고은을, 기린 지역에 사는 店鋪 개설한 사람인 부유재가 제 席을 외상으로 사가고선 다 주지 않은 [값의] 은 추징하러 가는 김에, 저 지금 또 席, 누룩, 양가죽으로 된 웃옷, 종이 등 물건을 교역하러 가겠습니다. 李茂俊, 저의 패에 사람이 10명, 탈 말이 3마리, 화살집 2개, 칼 1자루, 수레 7대, 수레 끌 소가 14마리입니다. 청컨대, 威遠堡邊 나가게 하는 문서를 발급해주십시오.[110]

---

108) 『黑圖檔·康熙朝』 제48책, 520, p.359, 강희 47년 칠월 23일 部行檔.
"kubuhe suwayan i bencan i menggun jafaha hūdai niyalma ts'ui fung lai i alibuhangge. (중략) bi duleke aniya mini hūdai jaka be girin i ula de gamafi niyalma de darume buhebi. te mini beye dasame kubun boso dabsun i jergi hūdai jaka be gamafi neneme juwen buhe hūdai menggun be suwaliyame bošome gajifi mini edelehe alban de dosimbure dorgi ku i menggun be afabuki sembi. ts'ui fung lai mini hoki niyalma tofohon (+sejen ?) tohoro morin, lose dehi sunja."

109) 『黑圖檔·康熙朝』 제48책, 527, pp.362-363, 강희 47년 칠월 28일 部行檔.
"gulu suwayan i foron nirui bencan menggun jafaha hūdai niyalma sung coo ing ni alibuhangge. (중략) mini jafaha bencan i menggun jai juwen gaiha dorgi ku i menggun be, bi buthai ula de gamafi hūdašame, hūdai jaka be juhiyan i da gahana i jergi ursede darume buhe. bi te geli boso huhu derhi hoošan i jergi jaka be gamafi, neneme buhe, fe hūda be sualiyame bošome gajifi, edelehe dorgi ku i menggun de toodaki sembi. sung coo ing mini hoki niyalma juwan duin, yaluha morin jakūn, sejen jakūn, sejen ušara igan juwan juwe, morin duin. bairengge u yuwan pu jase tucibure bithe bahabureo seme alibuhabi."

110) 『黑圖檔·康熙朝』 제48책, 532, pp.365-366, 강희 47년 팔월 초4일 部行檔.
"gulu suwayan i foron nirui bencan jafaha hūdai niyalma li mo jiyūn i alibuhangge. jase tucire bithe bahabure be baire jalin. bi jafaha bencan i menggun juwen gaiha dorgi ku i menggun be, girin i bade tehe diyan neihe niyalma fu io ts'ai, mini derhi be darume gamafi, edelehe menggun be bošome gaifi, bi te geli dergi, huhu, hūnci jibcan, hoošan i jergi jakabe hūdašame

유조변 너머 서북쪽 송화강 유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울라인들은 그곳에서 나는 東珠 채취, 담비 가죽을 얻기 위한 수렵 활동과 고기잡이에 종사하고 있었다. 일찍이 이곳에서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곡식과 면화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의 각 내무 기구에서는 매년 울라인에게 성경의 장원에서 생산한 곡식, 면화, 소금, 실, 포 등을 분배해 주었지만, 여전히 이 같은 필수 물자에 대한 수요는 남아 있었다.[111] 임경선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내고의 잉여 면화를 매각하러 가는 곳도 이곳 울라였다. 출변 허가증 발급 요청 문서에 보이는 상품들은 모두 포, 종이, 누룩 등으로 울라에서는 나지 않는 것들이었다. 한편, 성경 쪽도 울라에서 생산되는 물자에 대한 수요가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庫銀 수입·지출 내역 보고서의 지출 항목에는 북경의 황실에 헌납할 담비 가죽, 수달 가죽, 노루 가죽 등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된 비용이 있다. 내고의 수요품 매입을 담당하였던 내무부 상인들이 울라에 가서 각종 가죽을 구매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보아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에게는 울라에 가서 장사하는 것이 여상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인용한 출변 허가증 발급 요청 문서가 이를 방증한다.

또 주목해 볼 것은 내무부 상인과 함께 나간 사람들과 말, 수레 등의 숫자이다. 한번 울라에 장사하러 갈 때마다 약 1.5마리에서 2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 일고여덟 대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교역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다. 이정도 물량의 상품을 교역하기 위해서는 상인 자신과 상인방정 둘의 노동력으로는 충분치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출변 허가증 발급 요청 문서에 기재된 내무부 상인과 함께 나가는 사람의 수는 10명에서 15명 정도였다. 상인이 소유한 장정 한두 명을 더하더라도 상인 한 명이 최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섯 명 정도에 불과하였다.[112] 그렇다면 두세

---

genembi. li mo jiyūn mini hoki niyalma juwan, yaluha morin ilan, jebele juwe, loho emke, sejen nadan, sejen ušara igan juwan duin. bairengge, u yuwan pu jase tucibure bithe be bahabureo seme alibuhabi."

111) 『黑圖檔·康熙朝』 제11책, 2-3, pp.4-7, 강희 9년 정월 초9일 京行檔; 제11책, 118, pp.273-274, 강희 10년 정월 12일 京行檔.

112) 內庫銀 체납 문제나 革退 요청 등으로 상인의 家産을 조사한 내역을 보면, 대체로 상인 한 명이 소유한 장정은 한두 명이었다. 이러한 장정은 주로 매매된 사람으로 집과 같이 家産처럼 취급되었다.

명의 상인이 함께 패를 이루어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추정된다. 내무부 상인끼리 패를 이루거나 민인과 패를 이루어 상업 활동에 종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바로 강희 45년(1706)에 수면 위로 떠오른 '양사원의 布銀 虧欠 사건'이다.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다. 강희 45년 정월에 성경 형부에서 성경 장관 방좌령에게 서신 한 건을 보내왔다. 북경 형부에서 양사원의 布를 구매하고도 아직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성경의 내무부 상인 중에 있다고 서신을 보내왔으니 속히 이들에게 布銀을 징수해 보내라는 것이었다.[113] 상인들 간의 채무 문제인데도 형부가 개입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양사원이 돌려받지 못한 돈이 총관내무부의 內庫銀이었기 때문이었다. 山海衛 민인인 양사원은 총관내무부 속하 정백기 산치쿠 니루의 상인인 단지금과 한 패를 이루어 장사하고 있었다. 당초, 단지금은 內公庫에서 官銀을 대출하고선, 이 은을 가지고 성경 등지에 가서 布를 사서 성경의 상인들에게 팔기로 양사원과 함께 논의하였다. 외상으로 주되 넉 달 안에 값을 치르게 하자, 늦어지면 월 단위로 계산해서 이자 받자는 상세한 계획까지 세웠다. 그런데 1,360냥과 3,300냥 값어치의 가죽옷을 가지고 성경 등지에 교역하러 간 양사원은 한참 지나도록 되돌아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단지금은 官銀을 돌려받지 못해 납부해야 하는 황실 제사용 돼지를 구매하지 못하였다. 그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단지금은 총관내무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양사원은 민인이었기 때문에 총관내무부는 형부에 협조 요청 자문을 보냈다.[114]

양사원은 엉뚱한 일로 북경에 되돌아오게 되었다. 몰래 인삼을 채취한 일로 붙잡혀 북경으로 이송된 것이었다. 양사원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행적이 낱낱이 밝혀졌다. 은과 가죽옷을 가지고 성경 등지로 간 양사원은 이를 팔아 수입을 얻었다. 이 은으로 다시 포 등의 물품을 사서 성경에 가서 외상으로 팔았다. 단지금과 약정한 대로 넉 달 안에 은을 완납하지 않으면 달마다 1냥에 3푼의 이자를 거두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포를 외상으로 사간 사람 중에 바로 성경의 내무부 상인인 송산과 성

113) 『黑圖檔·康熙朝』 제32책, 91, pp.112-113, 강희 45년 정월 30일 部行檔.
114) 『黑圖檔·康熙朝』 제32책, 194, pp.221-226, 강희 45년 칠월 23일 部行檔.

화림이 있었다. 한편, 관은 납부를 재촉받은 양사원은 자신에게서 포를 외상으로 가져간 사람들이 은을 갚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은을 추징할 것을 청원했다. 형부는 총관내무부와의 논의 끝에 제사용 돼지를 납부하는 차역을 이행해야 하는 단지금은 그대로 북경에 남기되, 그의 家人들과 양사원을 성경으로 보내 布銀을 추징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북경 형부는 이러한 사안으로 성경 형부에 서신을 보냈다. 성경 형부에서 양사원과 송산, 성화림을 대질 심문한 결과, 이들이 양사원의 布銀을 虧欠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송산과 성화림은 외상값을 곧바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강희 42년(1703)에 양사원에게서 각각 1,077냥, 116냥 어치의 포를 구매한 송산과 성화림은 강희 39년에 각기 內庫에서 대출받은 은 700냥과 600냥을 합쳐 함께 장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양사원에게 구매한 포를 재차 성경 지역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런데 송산과 성화림에게서 포를 구매해 간 이 사람들이 아무리 독촉해도 布銀을 조금도 갚지 않는 것이다. 이에 송산과 성화림은 이들이 갚지 않은 외상값은 성경 內庫銀과 관계가 있으니 대신 추징해줄 것을 성경 장관방좌령에게 청원하였다.[115]

이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내무부 상인들의 상업 활동 양태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내무부 상인은 다른 상인과 合資하여 상업 활동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이때, 같은 내무부 상인들끼리 패를 만들기도, 민인과 패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합자와 공동 경영을 통해 위험 부담을 분산하고 보다 큰 규모의 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다. 또, 민인과 함께 경영한다면, 할당된 물자 구매 및 납부 등의 차역 때문에 몸이 묶여 있는 내무부 상인을 대신하여 민인이 중거리 교역을 수행할 수도 있었다. 물론, 내무부 상인은 그 신분 덕분에 內庫銀을 대출받아 상업 자본을 댈 수 있었으니 민인 입장으로서도 나쁠 것이 없었다. 둘째, 이러한 중거리 교역을 매개로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은 비단 성경 지역의 기·민

115) 『黑圖檔·康熙朝』 제32책, 96, pp.117-119, 강희 45년 이월 12일 部行檔.

인뿐만 아니라 북경의 내무부 상인과 기타 지역의 상인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은 비록 신분과 거주 지역이 달랐지만, 서로의 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의 상업 활동은 境內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성경 지역은 조선과의 경계에 근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과 陪都라는 행정적 지위상 조선인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매년 북경으로 파견되는 조선 사행이 지나가는 공식 루트에 있었다. 성경에 도착하기 전에 조선 사행이 거쳐오는 유조변의 변문과 봉황성에서는 사행에 따라온 조선인들과 지역민들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중에는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도 있었다.

강희 45년(1706), 欄頭들이 성경 호부에서 발급받은 車票를 내세워 성경의 내무부 상인이 조선과 교역하는 것을 제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7세기 말경에 처음 등장한 欄頭는 정황기의 기인 胡朝輔를 주축으로 한 12명의 성경 지역 상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강희 29년(1690) 이래 성경 호부에 매년 2,000냥을 납부하는 대신 조선 사행의 방물과 세폐를 운송할 수 있는 독점권을 얻었다.[116] 독점 운송인의 등장으로 조선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다. 난두는 점점 더 많은 액수의 운송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고의로 운송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117] 이러한 상황 보고를 받은 조선 조정에서는 수차례 난두 폐지를 요청하였다. 결국 옹정 원년(1723)에 최종적으로 철폐되었다.[118]

난두의 독점으로 인한 조선 상인의 피해 상황은 잘 규명된 반면,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이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었다.[119] 『黑圖檔』에는 조선과의 교역권을 둘러싼 난두와 성경의 내무부

---

116) 楊軍,「淸代中朝邊境貿易中的“欄頭”」, 淸史硏究』2010(1), p.109.

117) 김선민,「欄頭: 청-조선 조공관계의 변경적 측면」,『대구사학』96, 2009.8, pp.172-174.

118) 楊軍, 앞의 글, p.112.

119) 난두 철폐 이후 그동안 난두가 성경 호부에서 수령한 대량의 本銀과 이자 은을 虧欠하고 있었음이 밝혀지자, 이들은 조선 상인들이 자신들에게서 구매한 물품의 외상값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하였다. 이 사건은 국가적인 채무 사건으로 비화되어 조선 조정에 큰 어려움을 안겼다. 이 때문에 난두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난두 연구는 김선민, 앞의 글; 楊

상인들의 분쟁 사안이 담긴 문건이 남아 있다. 이 사안을 재구성해내자면 다음과 같았다. 강희 45년 난두의 조선 교역 독점 시도에 대해 봉황성 城守衛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독점 운송권으로, 내무부 상인의 조선 교역을 막을 명분이 없다'며 난두를 질책하였다. 그러나 난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듬해 재차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이 조선 교역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번에는 성수위가 완전히 태도를 바꿔 난두들을 옹호하였다.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은 성수위가 난두와 밀통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성경 장관방좌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원하였다.[120] 이 문서에 담긴 전후 사정을 통해 그간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이 조선과의 교역에 종사해왔음을 알 수 있다.

> 성경 내무를 관장하는 니루 장긴 등이 총관내무부에 올린 呈文, 세 구사의 상인 임홍균, 이정유, 당형주 등의 열네 사람이 올린 呈文. 관의 商業票[hūdai piyoo], 車票[sejen i piyoo], 조선의 보따리[包]를 얻게 하여서, 조선의 상품 교역하게 하기를 청하는 일.
>
> "강희 10년, 어전(:황제)의 本銀을 저희에게 사람마다 100냥씩 맡겨서 상인으로 세웠습니다. 강희 39년, 언두링거 어전(:황제)의 큰 은혜를 입어 內庫銀을 대출해주심에 저희들 상인은 600냥, 700냥, 500냥 각기 다르게 빌렸습니다. **저희가 이 은을 수령해서 해마다 봉황성의 변 外內에서 조선과 교역하고 息銀을 납부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중략) 그뿐만 아니라, 저희 열네 상인은 本銀 수령해서 조선과 교역한 지 30여 년입니다.** 조선에 외상으로 준 묵은 값 매우 많습니다. 지금 황이 등 열일곱 사람이 조선의 교역을 전부 독점했습니다. 조선이 저희에게 빚진 묵은 값(:외상값)을 [추징하기를 저희] 전부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저희가 맡은 本銀, 그리고 대출한 內庫銀의 본전과 이자를 얻지 못하면, 노복인 저희 모두 죽음에 이릅니다."[121]

軍, 위의 글; 姚春冉,「康雍年間淸鮮朝貢貿易中"攬頭"及欠銀問題探析」,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참조.

120)『黑圖檔·康熙朝』제21책, 197, pp.171-173, 강희 46년 십이월 초5일 京行檔.

121)『黑圖檔·康熙朝』제21책, 197, pp.171-173, 강희 46년 십이월 초5일 京行檔.
"mukden i dorgi baita be kadalara nirui janggin sei, dorgi baita be uheri kadalara yamun de aliburengge. ilan gūsai hūdai niyalma in hūng giyūn, li ging io, tang hiying dzu sei jergi juwan duin niyalma alibuhangge. alban i hūdai piyoo, sejen i piyoo, solho i boose be bahabufi, solho i hūda hūdašabure be baire jalin. elhe taifin i juwanci aniya, ejen i bencan menggun be mende

인용문에서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은 조선과의 교역에 종사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서가 작성된 해는 강희 46년으로, 어림잡아 성경에 내무부 상인 제도가 도입된 초기부터 이미 내무부 상인들은 변경 교역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수도 적지 않았다. 난두에 맞서 독점 운송권과 독점 교역권을 달라는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 14명이었다. 즉, 33명의 내무부 상인들 중 절반 가까이가 조선과의 교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요컨대,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은 매년 소정의 息銀을 납부하기 위해 성경 지역 내에서의 상업 활동은 물론, 기린 울라, 조선 등과의 출변 교역에도 종사하고 있었다. 수령한 본은과 자신의 자산에 더해 강희 39년(1700)에 대출받은 수백 냥의 내고은(다음 절에서 후술)을 상업 자본으로 삼아 상당한 규모의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한편, 내무부 상인들은 겸정과 집안의 장정들은 물론, 또 다른 상인들과 함께 집단을 이루어 상업 활동에 종사하였다. 合資와 공동 경영으로 위험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보다 큰 규모로 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다.

---

niyalma tome tanggūta yan jafabufi hūdai niyalma sindaha. elhe taifin i gūsin uyuci aniya, enduringge ejen i deserengge kesi be alifi dorgi ku i menggun be juwen sindara de meni jergi hūdai niyalma, ninggun tanggū yan, nadan tanggū yan, sunja tanggū yan adali akū juwen gaihabi. be ere menggun be jafafi aniyadari funghūwang ceng ni jase tole dolo, solho i hūda be hūdašame, madagan i menggun jafabume gūsin aniya funcehebi. (중략) tere anggala meni juwan duin hūdai niyalma, bencan i menggun jafafi, solho i hūda be hūdašame gūsin aniya funcehe bi. solho de darume buhe fe hūda umesi labdu. te hūwang el i jergi juwan nadan niyalma, solho i hūda be wacihiyame ejelehebi. solho mende edelehe fe hūda be waliyarade isinambi. meni jafaha bencan i menggun, jai juwen gaiha dorgi ku i menggun, beye madagan be baharakū ohode, ahasi be gemu ergen beye be isinambi.”

2. 내무부 상인의 內庫 재정 기여

내무부 상인들이 일 년에 납부하는 약 990냥의 息銀은 청대 내무부의 재정 규모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 보면 그야말로 구우일모에 지나지 않는다. 북경의 廣儲司에는 해마다 鹽政, 榷關 세수, 인삼 판매, 貢品, 部庫 拔款, 捐納 등 다양한 수입원에서 나오는 막대한 은량이 들어왔다.[122] 다소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건륭 33년(1768) 기준 북경 廣儲司의 現存銀이 총 2,004,704냥에 달하였다는 사실에 견주어 보더라도 북경의 내무부 상인들이 납부하는 '1만 냥도 안 되는 息銀'은 주요 수입원 축에 끼지 못하였다.[123] 하물며 성경의 내무부 상인에게 수취하는 990냥의 息銀은 말할 것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성경 內庫의 재정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속단이다. 아래에서는 강희 5년부터 강희 39년에 이르는 내고은 수입·지출 내역 보고서를 상세히 분석하여 성경 內庫의 재정 규모를 확인하는 동시에 성경의 내무부 상인이 수행한 차역이 內庫 재정 증식에 기여한 바를 살펴보겠다(부록 참조).[124]

靑冊의 庫銀 수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성경 內庫의 은량 수입은 크게 고정 수입과 유동 수입으로 나눌 수 있었다. 내무부 상인 제도가 도입된 강희 10년(1671) 이전, 성경 內庫의 고정 수입원은 ①내고 관할 점포를 임대하여 얻은 租銀뿐이었다.[125] 그러나 강희 10년 이후에는 점포 임대

---

122) 祁美琴, 앞의 책, 제5장; Preston M. Torbert, The Ch'ing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 A Study of its Organization and Principal Functions, 1662-1796, Cambridge, Mass.: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제4장 참조

123) 건륭 33년의 現存銀 액수는 『康熙帝起居注』제27책, 건륭 33년 오월 丙午(19), p.255, 박민수 2019에서 재인용. 한편, 강희 37년의 연말을 기준으로 북경에는 1등 상인이 10명, 2등 상인이 22명, 3등 상인이 160명 있었다. 이들로부터 거둔 강희 37년의 息銀 총수입은 8,982.5냥이었다(『大連圖書館藏淸代內務府檔案』제6책, pp.485-487, 강희 38년 정월 23일 奏文).

124) 강희 연간 성경 內庫의 庫銀收支靑冊은 강희 4년 정월에 보고한 문서부터 남아 있다. 각 靑冊은 전년도의 고은 수입·지출 내역을 계산하여 보고한 것이었다. 예컨대, 강희 5년의 庫銀收支靑冊은 강희 4년의 고은 수입·지출 내역이 담겨 있다. 강희 39년을 상한으로 잡은 것은 이 해 내고은 대출이 시작되면서 庫銀 계산 방식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25) 내무부에서는 官房을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매년 임대세를 받

료와 함께 매년 ②13-33명의 상인들이 납부한 息銀이 고정 수입으로 들어왔다. 강희 13년 이후로는 ③內庫에 축적된 쪽을 매각하여 얻은 수익도 매년 빠짐없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유동 수입으로는 ㉠內庫에 축적된 면화·소금의 잉여분을 매각하여 얻은 수익, ㉡상삼기 보오이들의 罰·贖銀, ㉢철폐 장원의 耕牛 판매 수익 등이 있었다. 매년 잉여분을 折銀하는 쪽과 달리 면화·소금은 몇 년 치의 축적분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도 변질될 위험이 적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고정 수입원 중 수익이 가장 큰 것은 다름 아닌 상인이 납부하는 息銀이었다. 앞서 언급한 강희 33년(1694)의 '성경 內庫 설립 이래 총 수입·지출 내역 보고'에 따르면, 점포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은 순치 8년(1651)부터 시작하여 총 6,450.8냥, 息銀 수익은 강희 10년(1671)부터 시작하여 총 14,382.5냥, 쪽 매각 수익은 강희 13년부터 시작하여 총 1,820.871냥이었다.[126] 기간 차를 보정하지 않더라도 息銀에서 나오는 수익이 단연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수입·지출 내역 보고서의 기록과 달리 息銀이 매년 虧欠 없이 납부되었을 확률은 매우 낮지만, 점포 임대료과 쪽 매각 수익도 매년 일정치 않은 것은 매한가지였다. 점포는 하자가 발생하면 수축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임차인이 없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공실로 놔두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실제로 강희 14년과 16년에는 건물이 무너져서 수축 비용으로 각각 7개월, 1년분의 임대료를 공제해야 했다.[127] 강희 17년에는 칠월 이후 임차인이 없어 상점 네 곳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128] 오늘날 건물 임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 당시에도 낱낱이 드러나는 셈이

았다. 관방은 적몰 기인의 점포, 휴흠분을 상환하기 위해 추징한 점포 등에서 내원하였다.

126) 해당 보고의 쪽 매각은 수입과 內庫收支靑冊의 강희 13년-강희 33년 쪽 매각은 수입 총액은 부합한다. 즉, 각 문서의 액수가 實數임을 상호 방증한다. 息銀과 달리 靑冊 내에도 상세한 계산 내역이 있는 나머지 수입원 역시 靑冊에 기록된 액수가 實數일 확률이 매우 높다.

127) 『黑圖檔·康熙朝』 제12책, 224, pp.244-245, 강희 15년 정월 24일 京行檔; 343, pp.334-336, 강희 17년 정월 초6일 京行檔.

128) 『黑圖檔·康熙朝』 제13책, 3, pp.334-336, 강희 17년 정월 16일 京行檔.

었다. 쪽의 折色銀도 해마다 생산량이 달랐기 때문에 매년 수익이 일정치 않았다. 생산량이 적은 해에는 20냥에 채 미치지 않았고 가장 많은 수입을 거둔 해에도 200여 냥에 불과하였다.

내무부 상인의 재정 기여 정도는 息銀 수입 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出邊執照 발급 요청 문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내무부 상인들은 내고 물자의 매각을 실제로 도맡고 있었다. 면화·소금의 잉여분은 매년 매각되지는 아니었지만 한번 매각할 때마다 거액의 수익이 발생하는 주요 수입원이었다. 내고 물자 매각과 息銀 납부로 내무부 상인들이 내고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는 평균 약 70%에 달했다. 직접적인 기여분이라 할 수 있는 息銀만 계산하더라도 약 9년에 한 번 꼴로 있었던 잉여 면화를 매각하는 해가 아니라면 1년 총수입의 60%를 거뜬히 넘겼다(그림 2 참조).

그림 2. 강희 11년(1672)-33년(1694) 내무부 상인의 內庫 재정 기여도[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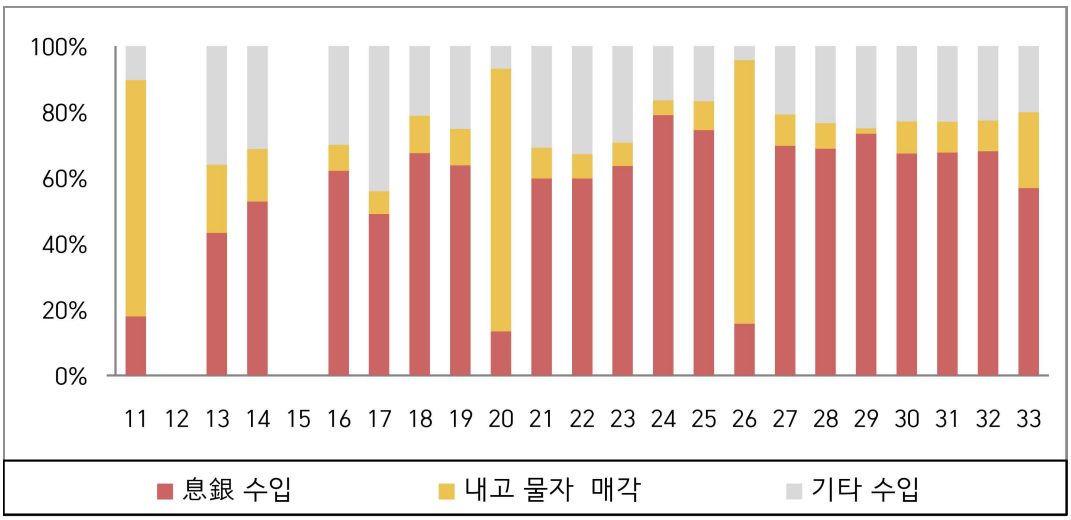

129) 강희 12년-34년의 庫銀 수입·지출 내역 보고서, 강희 10년-16년의 月摺檔, 강희 33년의 '성경 內庫 설립 이래 總收支 내역 보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靑冊 내에 기록된 息銀의 액수가 實數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강희 33년 總收支 내역 보고'와의 차액을 반영하여 息銀 수입 값을 보정하였다. 또한 수입·지출 내역 보고서가 失傳되어 수입을 파악할 수 없는 강희 12년과 15년은 공백으로 처리하였다.

내무부 상인의 재정 기여로 강희 11년 이래 성경 內庫에 축적된 은량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래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13명의 1차 상인들과 18명의 2차 상인들이 각각 본격적으로 息銀을 납부하기 시작한 강희 11년과 강희 24년을 기점으로 내고의 存銀 축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강희 10년 전까지만 해도 5,000냥에 못 미치던 내고의 存銀이 강희 33년 무렵에는 약 3만 냥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3. 강희 6년-33년 성경 內庫 存銀의 변동 양상[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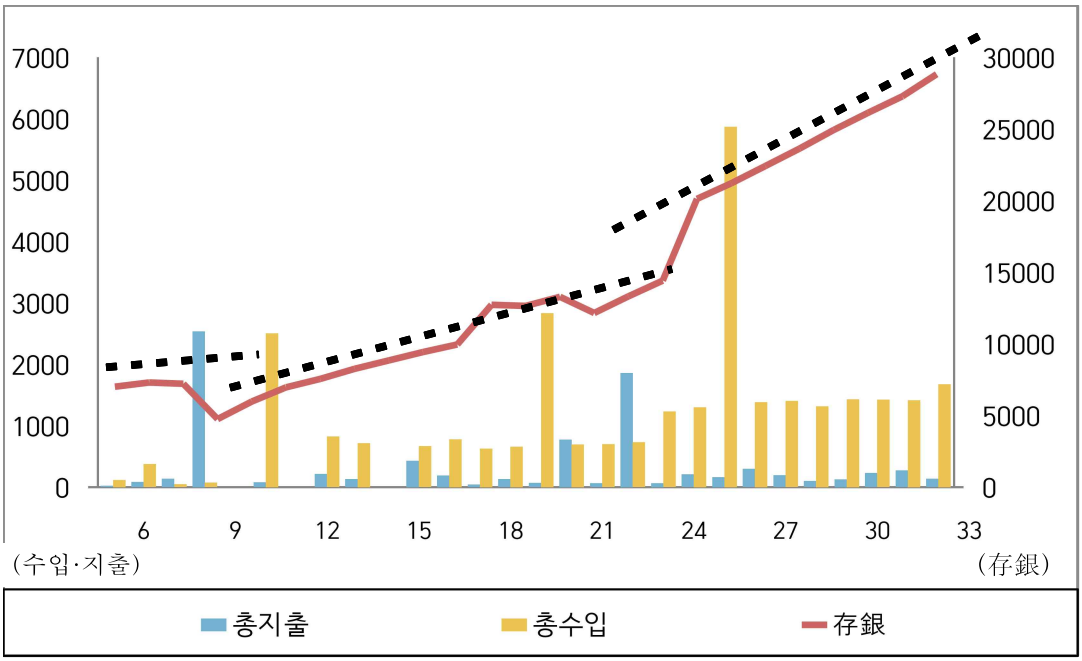

(단위: 兩)

이러한 사실은 당시 성경 내무를 관장하던 좌령 역시 잘 알고 있던 바였다. 성경 내고에 축적된 은량이 3만 냥에 다다른 강희 33년(1694) 윤오월, 장관방좌령 삼관보 등은 내고에 비축된 은량을 활용하자는 취지의 정문을 총관내무부에 보냈다. 성경 내무 기구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은량은 앞으로도 매년 걷힐 상인들의 息銀과 점포 임대세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니, 내고에 비축된 은은 다른 쓸 곳을 찾는 것이 어떻

130) 강희 7년-34년의 內庫收支靑冊의 수입·지출·現存 내역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靑冊이 失傳되어 파악할 수 없는 강희 10년, 12년, 15년은 누락하였다.

겠느냐는 주장이었다. 이때 장관방좌령이 제시한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성경의 내고은을 성경 호부에 넘기는 대신, 북경 호부에서 가져오던 성경 호부의 봉록 은을 북경 광저사로 이관하자고 하였다.[131] 그동안 내무 기구를 비롯한 성경의 각 기구 소속 관원과 바이탕가들에게 봉록을 지급해오던 성경 호부는 북경 호부로부터 봉록 지급에 필요한 은을 받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제안한 방안에 따르면, 은량을 북경에서 성경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필요한 노동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그 대신 북경과 성경에서 각각 지척에 있는 內庫와 部庫 간 단거리 운송만 하면 되었다.[132] 일 년간의 논의 끝에 강희 33년의 제안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강희 39년(1700), 장관방좌령은 그간 더욱 늘어난 內庫銀을 활용할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다. 바로 內庫銀 대출이었다.

> 은 대출 시작하기를 청하는 일.
>
> 살펴보건대 저희 **세 니루의 상인들이 해마다 납부한 息銀, 남은 면화, 소금 등의 물자를 판 은인 총 3만 냥 남짓한 은을 지금 庫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은을 전혀 쓸 곳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저희 세 니루의 관원, 바이탕가, 상인들 [중에] 빌리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저희 세 니루의 효기교, 최장 등에게 보증하시켜서, 재산 있는 사람들을 酌量하여 대출해주고자 합니다. [대출해] 준 날로부터 계산해서 1냥 은에 1푼씩의 이자를 두 철[마다] 수취하고자 합니다.** 얻은 [이자]은의 수량을 연말에 분명하게 헤아려서, 관원들에게 서신 올리고자 합니다. 대출해간 사람들 중에 본은, 이자 [납부]를 지연시키면, 은을 대출한 사람들과 보증한 사람들을 아울러 무겁게 치죄하고자 합니다. 혹여 본은, 이자를 써버리거나 [납부를] 지연시키면, 저희 세 니루 장긴이 원컨대 죄

131) 『黑圖檔·康熙朝』 제18책, 67, pp.79-80, 강희 33년 윤오월 초2일 京行檔.
"kude daci jeku uncaha menggun, aniya aniyai hūdai niyalma de gaiha madagan, puseli turigen i menggun uheri juwe tumen nadan minggan yan funceme bi. jai yoohan saksu be dabume ilan minggan gin bi. emu aniya buyarame baitaralade aniyadari gaiha hūdai ursei madagan, puseli i turigen bisire be dahame, ne kude bisire menggun, yoohan baitalara ba akū. ere menggun be eici ubai boigon i jurgan de afabufi, ging hecen ci gajire funglu menggun be tubaci guwang cu sy de afabure, eici yoohan suwaliyame ging hecen de benju sere babe tubaci unggihe manggi, dahame yabuki sembi."

132) 성경 장관방좌령이 제안한 강희 33년의 방안은 內庫와 部庫를 독립된 재정 기구로 바라보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를 받아서 갚고자 합니다. 이러하면 은을 취해 간 사람들, 이자 낮은 데다가 어전의 성은을 입어서 넉넉잖은 사람들이 살길을 또한 얻습니다.[133]

성경 장관방좌령은 내고에 축적된 3만여 냥의 은량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관원, 바이탕가, 상인에게 대출해주고 일 년에 두 번 이자를 수취하자고 정문을 올렸다. 총관내무부의 轉奏를 거쳐 허가 상유를 받은 이 해 칠월에 곧바로 내고은을 성경 상삼기 니루·혼토호의 관원, 바이탕가, 상인들에게 대출해주기 시작하였다. 본은 상환 기한이 없는 데다가 연이율 12%이라는 퍽 괜찮은 조건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內庫銀을 대출받았다. '내고은 대출 장부'에 따르면, 대출을 시작한 칠월 초부터 이듬해인 40년 팔월 초까지, 총 13개월 동안 대출해준 내고은이 무려 37,550냥에 달하였다.[134] 그동안 축적된 성경 내고은의 전액에 가까웠다.[135] 1년에 두 번 들어오는 이자 은은 다시 대출 원금으로 삼아 대출해주었다. 이처럼 강희 39년부터 대출·상환 방식이 변화하는 강희 44년(1705) 십일월에 이르기까지 대출해준 내고은은 총 70,580냥이었다.[136] 앞 절에서 인용한

133) 『黑圖檔·康熙朝』 제20책, 66, pp.72-74, 강희 40년 구월 초4일 京行檔.
"menggun juwen sindara be baire jalin. baicaci meni ilan nirui hūdai urse aniyadari buhe madahan, funcehe kubun, dabsun i jergi jaka be uncaha menggun, uheri ilan tumen yan funcere menggun be ne ku de asarahabi. ere menggun be umai baitalara ba akū. bahaci meni ilan nirui hafan baitangga hūdai urse juwen gaiki sere niyalma bici, meni ilan nirui funde bošokū, ajige bošokū, bošokū data sede akdulabufi, hethe bisire urse be acara be tuwame juwen buki. juwen buhe inenggici bodome emu yan de emte fun i madagan be juwe forgon gaiki. baha madagan i ton be aniyai dubede getukeleme bodofi, ambasa de bithe alibuki. juwen gaiha ursei dorgi da beye madagan be tookabuci, menggun juwen gaiha urse akdulaha urse be suwaliyame ujelme weile araki. edelehe menggun be toodabuki. aikabade da beye, madagan be fayara tookabure oci, meni ilan nirui janggin cihanggai weile alifi toodaki. uttu ohode, menggun gaijara urse, madagan weihun bime ejen i deserengge kesi be alifi, yadara urse banjire juhun be inu bahambi."
동일 문서가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內務府奏銷檔』 84권 80호, p.253에 실려 있다.

134) 대출해준 본은과 징수한 이자 은의 액수를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작성한 '내고은 대출 장부'를 매년 팔월 내고은 수입·지출 장부와 함께 북경 총관내무부에 올렸다.

135) 『黑圖檔·康熙朝』 제20책, 66, pp.72-74, 강희 40년 구월 초6일 京行檔.

136) 『黑圖檔·康熙朝』 제23책, 164, pp.157-162, 강희 56년 구월 25일 京行檔.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내무부 상인들도 각기 500냥에서 800냥의 내고은을 대출받았다. 내고은 축적에 기여한 상인들의 몫을 생각해본다면, 사실상 그동안 그들이 납부한 은을 재분배받는 것과 진배없었다.

이처럼 성경 內庫에 축적된 은량이 절대적으로는 미미한 액수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축적된 은량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성경 내고은의 지출이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성경 내고에서 지출하는 항목은 서너 가지로 한정되었다. 첫째, 흉작 등의 사유로 북경에 납부해야 하는 定額의 생산물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납부액을 맞추도록 內庫銀을 써서 구매하였다. 둘째, 매년 북경으로 보내는 과일을 절일 설탕과 細鱗魚를 변질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데에 사용할 돼지기름 등을 구매하였다. 셋째, 매년 북경에 납부하는 모피를 염색할 때에 필요한 黑礬(청색 염료)과 硝石을 구매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출은 모두 북경으로 보낼 생산물이나 이러한 생산물을 가공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발생하였다. 성경 내무 기구 내부 용도로 지출되는 비용은 가끔 발생하는 광저사 소유의 店鋪 수축에 필요한 자재 구매비 정도였다.[137] 즉, 성경 내무 기구는 철저하게 황실 속하의 생산 기지로서 모든 소비는 북경에서 이루어졌다. 성경 내고에서 다양한 은량의 수익처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축적된 은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성경 내무 기구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성경의 내무부 상인이 매년 납부하는 息銀은 성경 내고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입이었다.

137) 성경의 내무 기구 전체에서 수취하는 은은 비단 內庫에 들어오는 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채포아문(후의 장의사) 속하 果園丁들은 강희 6년 이래로 각각 매년 3냥씩의 절색은을 납부하였다(『黑圖檔·康熙朝』 제1책, 230, pp.438-439, 강희 6년 십일월 11일 京來檔 참조). 그러나 이 은은 북경에 납부하던 각종 과일의 절색분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북경으로 보내졌다. 따라서 성경 내무 기구 전체로 확장하더라도 이들 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던 은량은 극히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순치 원년(1644)의 入關 직후, 盛京에 있었던 내무부는 북경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여전히 황실의 수요에 따라 매년 생산물을 납부하는 황실 소유의 장원과 과원들이 남아 있었다. 인삼, 초피, 동주, 세린어 등 만주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도 관리되어야 할 황실의 재산이었다. 이에 순치 연간부터 강희 초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내무를 관장하기 위한 각종 관원과 바이탕가들이 신·증설되었다. 강희 6년(1667)과 9년, 두 차례에 걸친 성경 內庫 속하 관원의 '상인 신설 청원'은 이처럼 성경 내무 기구가 확충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강희 10년(1671)과 강희 23년(1684), 두 번에 걸쳐 세운 성경의 내무부 상인은 모두 내고(강희 16년 이후의 광저사)의 구성원이었다. 내고 관할 장원의 장두와 내고 업무를 맡아 본 관원·바이탕가의 형제나 자손으로, 상인으로 선발되기 전 이들은 '실 잣기, 버섯·목이·蕨菜 납부하기' 등 자질구레한 차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선발 후 내무부 상인으로서 '내고 물자 매각'과 '수령한 本銀에 대한 息銀 납부'의 의무를 맡게 되었다. 업무 수행의 대가로 상인 본인을 포함하여 세 명 장정 몫의 기존 차역을 면제받았다.

상인으로서 각기 수령한 100냥에서 300냥의 내고의 본은은 '대출은'과 성격이 크게 달랐다. 기한 내에 본전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대출과 달리, 내무부 상인들은 革退되기 전까지 본은의 경영을 그만둘 수 없었다. 상인들이 납부한 息銀 수입은 대출한 내고은에 대한 이자 수입과 별도의 항목으로 계산되었다. 즉, 息銀 납부는 기존 차역을 면제받은 대신 새로이 부과된 일종의 '차역'에 다름없었다. 내무부의 입장에서는 상인을 통한 '수익성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번 상인이 되면 노환이나 가세 몰락으로 본은 경영이 어렵게 되더라도 승계자를 찾기 전까지는 그만둘 수 없었다. 따라서 상인이 증원된 강희 23년 이래로 강희 말년에 이르기까지 33인의 상인결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상인은 친족 계승이 원칙이었으나 형제나 자손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다른 좌령하인이 승계할 수 있었다. 이는 내무부 속하 장원의 장두결 승계 원리와 유사하다. 또, 평생 다른 직무로 바꾸거나 관원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다른 차역을 수행하는 대다수의 내무부 구성원들과 다르지 않았다. 차역 수행을 독책하는 관원도 따로 두어졌다. 따라서 내무부 상인은 다른 내무부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차역으로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alban i hūdai niyalma)'이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성경의 내무부 상인이 매년 납부하는 息銀은 내고 총수입의 60%에 달하였다. 그 때문에 내무부 상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성경 내고의 存銀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성경 장관방좌령은 증가한 存銀을 활용하기 위해 북경 총관내무부에 두 차례 방안을 제시해 올렸다. 그 결과, 강희 39년(1700) 성경 내고은의 대출 제도가 도입되었다. 대출 대상은 성경 내무 기구의 관원, 바이탕가, 상인들이었다. 상인들은 내고은을 대출받아 상인으로서 경영하는 본은 및 개인 자산과 함께 상업 자본으로 삼았다. 매년 소정의 息銀을 납부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은 다양한 상업 활동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주로 2, 3명의 상인이 패를 이루어 合資 경영하는 방식으로 수익 증대를 꾀했다. 비단 성경 지역 내에서의 상업 활동뿐만 아니라, 기린 울라 및 조선과의 출변 교역에도 종사하였다.

본고에서 밝혀낸 성경의 내무부 상인 제도의 운영 원리와 상인들의 신분 및 활동상은 내무부 상인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수백 명의 북경 총관내무부 상인 군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통해 내무부 상인에 대한 기존 연구의 지평이 확장되고 내무부 상인에 대한 인식이 일신되기를 기대한다. 또, 본고에서 연구한 성경의 내무부 상인들은 성경 내무부의 일원으로, 그간 皇莊 연구에 국한되었던 성경 내무부 구성원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내무부 상인들에 의한 본은 경영과 내고은 대출에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生息銀兩 연구에서는 '部庫나 內庫의 은량을 수령하고 이자를 납부한다'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상술한 두 제도를 비롯한 각기 다른 제도를 하나로 묶어 왔다. 향후 '생식은량'으로 묶였던 각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史料

A. 성경내무부당안

『黑圖檔·康熙朝』(全56冊), 趙煥林 主編, 遼寧省檔案館 編, 北京: 線裝書局, 2017

『黑圖檔·雍正朝』(全30冊), 趙煥林 主編, 遼寧省檔案館 編, 北京: 線裝書局, 2016

『黑圖檔·乾隆朝』(全24冊), 趙煥林 主編, 遼寧省檔案館 編, 北京: 線裝書局, 2016

※위 사료집의 만주어 원문은 일부가 아래의 출판물에서 中文으로 번역됨.

「《黑圖檔》中有關莊園問題的滿文檔案文件匯編」, 關嘉錄·王佩環 譯, 佟永功 校,『淸史資料』第5輯, 中國社會科學院歷史硏究所淸史硏究室編, 北京: 中華書局, 1984

「淸代盛京內務府滿文檔案選譯(五)」, 何榮偉·張虹·馮璐·田媛媛 譯,『滿族硏究』126, 2017(1)

『盛京內務府糧莊檔案匯編』, 遼宁省檔案館 編譯, 沈陽: 遼沈書社, 1993.

B. 북경내무부당안

『大連圖書館藏淸代內務府檔案』(全22冊), 大連圖書館編,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10

『淸代內閣大庫散佚滿文檔案選編』, 遼寧社會科學院歷史硏究所, 大連市圖書館文獻硏究室, 遼寧省民族硏究所歷史硏究室 譯編,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1

C. 율례·회전

大淸律集解附例(順治三年奏定律),『中國珍稀法律典籍續編』第5冊, 楊一凡·田濤 主編, 黑龍江人民出版社, 2002

大清律箋釋合鈔, 康熙41年(1776) 序錢氏思補堂 刊本(30卷), (淸)錢之靑 撰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所藏 漢籍善本全文影像資料庫)
大淸會典(康熙朝), (淸)伊桑阿 等編, 臺灣: 文海出版社, 1942

D. 통지
『八旗通志』(全8冊), 李洵·趙德貴 主點,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5 (底本은 八旗通志, 乾隆4年(1739) 武英殿本(150卷), (淸)鄂爾泰 等修)
盛京通志, 康熙23年(1684) 刊本(32卷), (淸)伊把漢·董秉忠 等輯, 孫成 等纂 (京都大學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
盛京通志, 乾隆元年(1736) 刊本(48卷), (淸)呂耀會 等編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欽定盛京通志, 乾隆44年(1779) 刊本(130卷), (淸)劉謹之, 阿桂 編 (浙江大學 圖書館 소장)
盛京通典備考, 光緖15年(1899) 刊本, (淸)雙順泰 編

E. 사전
『大淸全書』, 早田輝洋·寺村政男 編, 東京: 東京外國語大學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硏究所, 2004 (底本은 大淸全書, 康熙22年(1683) 刊本, 天理大學 圖書館 소장)

2. 연구서

祁美琴,『淸代內務府』, 遼寧民族出版社, 2009
賴惠敏,『乾隆皇帝的荷包』,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2014
劉小萌,『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 이훈·이선애·김선민 역,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서울: 푸른역사, 2013)
劉翠溶,『順治康熙年間的財政平衡問題(1644-1722)』, 嘉新水泥公司文化基

金會, 1969
韋慶遠·吳奇衍·魯素, 『淸代奴婢制度』,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2
張存武,『淸韓宗藩貿易』, 臺北: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985
(→ 김택중·안영자·박병석·손준식·김문 역, 『근대한중무역사』, 서울: 교문사, 2001)

Chen, Hailian, *Zinc for Coin and Brass: Bureaucrats, Merchants, Artisans, and Mining Laborers in Qing China, ca. 1683-1830s*, Leiden; Boston: Brill, 2019
Rawski, Evelyn S.,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ion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 구범진 역, 『최후의 황제들: 청 황실의 사회사』, 서울: 까치글방, 2010)
Symons, Van Jay., *Ch'ing ginseng management : Ch'ing monopolies in microcosm*, Tempe, Ariz.: Center for Asian Studies, Arizona State University, 1981
Torbert, Preston M., *The Ch'ing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 A Study of its Organization and Principal Functions, 1662-1796,* Cambridge, Mass.: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3. 연구논문

김선민,「欄頭: 청-조선 조공관계의 변경적 측면」,『대구사학』96, 2009.8
_____,「17-18세기 청대 인삼정책의 변화」,『중국학보』74, 2015
박민수,「'康雍乾 盛世' 生息銀兩 제도의 운영과 실제」,『中國學報』89,

2019.8

高雅婷·趙彥昌,「淸代盛京內務府硏究述評」,『滿族硏究』140, 2020(3)

高雅婷,「《黑圖檔》整理與硏究述評」,『蘭台世界』, 2021.8

關克笑,「盛京內務府棉莊」,『社會科學輯刊』63, 1989(4)

歐陽琳,「淸代東北旗人生計硏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8

佟永功,「盛京內務府戶口冊解析」,『淸史硏究』, 1995(2)

_____,「淸代盛京參務活動術略」,『淸史硏究』, 2000(1)

_____,「淸代盛京全管內務府設置沿革考」,『滿族硏究』, 2002(1)

佟永功·關嘉祿,「盛京上三旗包衣佐領述略」,『歷史檔案』, 1992(3)

_____,「盛京內務府糧莊述要」,『曆史檔案』, 1995(1)

滕德永,「乾隆朝內務府對庫存蔘斤的管理:《蔘斤變價》爲考察對象」,『故宮博物院院刊』, 2011(4)

_____,「淸代戶部與內務府財政關系探析」,『史學月刊』 2014(9)

賴惠敏,「乾隆朝內務府的當鋪與發商生息(1736-1795)」,『近代史硏究所集刊』28, 1997.12

馬寶童,「淸代廣儲司庫銀及其收支硏究」, 黑龍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文 武,「淸代生息銀兩制度及其影響分析」, 山西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孫曉瑩,「生息銀兩政策與內庫銀借貸-以內務府的生息銀兩運作爲例」,『淸史硏究』, 2015(4)

_____,「簡論淸代北京內三旗所屬內務府商人」,『靑華大學學報』35, 2020(1), pp.78-87

楊 軍,「淸代中朝邊境貿易中的“欄頭”」,『淸史硏究』, 2010(1)

吳奇衍,「簡論淸前期內務府皇商的興起-淸代內務府皇商經濟專題硏究之-」, 葉顯恩,『淸代區域社會經濟硏究』, 北京: 中華書局, 1992

王景麗,「淸前期內務府皇商範氏的商業活動探析」,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王 萌,「康熙朝後期的銅政改革與內務府官商」,『淸史硏究』, 2010(1)

王 月,「淸代盛京地區各衙門職掌及其行政關系探究」,『沈陽故宮博物院院

刊』, 2010(1)
王佩環,「清代東北採蔘業的興衰」,『社會科學戰』, 1982(4)
王　萍,「清康雍乾時期盛京皇莊研究」,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姚春冉, 「康雍年間清鮮朝貢貿易中“攬頭”及欠銀問題探析」,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院明道,「清代前期官商研究」,『西華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9(4)
魏鑒勛·關嘉祿,「康熙朝盛京內務府皇莊的管理」,『故宮博物院院刊』, 1984(2)
韋慶遠,「康熙時期“生息銀兩”制度的初創和運用－對清代“生息銀兩”制度衰過程研究之一」,『中國社經濟史研究』, 1986(3)
_____,「雍正時期對“生息銀兩”制度的整頓和政策演變－對清代“生息銀兩”制度衰過程研究之二」,『中國社經濟史研究』, 1987(3)
_____,「乾隆時期盛京地區的“生息銀兩”制和官店」,『社會科學輯刊』, 1987(4)
_____,「乾隆時期“生息銀兩”制度的衰敗和“收撤”－對清代“生息銀兩”制度衰過程研究之三」,『中國社經濟史研究』, 1988(3)
韋慶遠·吳奇衍,「清代著名皇商範氏的興衰」,『歷史研究』, 1981(3)
劉世珣,「近十五年 (1996－2010) 清代旗人生計問題研究的回顧與討論」,『史原』復刊3, 2012
李克毅,「清代鹽商與帑銀」,『中國社會經濟史研究』, 1989(2)
李　碩,「清代前期盛京商人研究」,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李小雪,「順康年間盛京上三旗包衣佐領所屬糧莊群體的組織與管理」,『清史研究」, 2019(2)
林永匡·王熹,「清代長蘆鹽商與內務府」,『古宮博物院院刊』, 1986(2)
任玉雪,「清代東北地方行政制度研究」, 複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
_____,「盛京內務府設立時間再探」,『歷史檔案』, 2003(1)
_____,「試析盛京內務府戶口(1644-1796)」,『清史研究』, 2003(2)
張建輝,「關於清代生息銀兩制的興起問題-清代生息銀兩制度考論之一」,

『中國社會經濟史研究』, 1998(1)
_____,「關於康熙生息銀兩制的初步推廣及其在八旗軍隊中的運用」,『清史研究』, 1998(3)
_____,「清代生息銀兩制度與中朝關系」,『鹹陽師範大學學報』25, 2010(5)
張　傑,「清代朝鮮使團與滿族雇車業述論」,『滿族研究』, 2008(1)
張正明·張舒,「從《范氏家譜》看山西介休范氏家族」, 張正明·孫麗萍·白雷編, 『中國晋商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06
鄭亦兵,「清代前期的官商」,『北京社會科學』4, 1997
趙郁楠,「清代雍正朝東北蔘莊及採蔘管理特點」,『滿族研究』, 2008(3)
何永智,「清代盛京戶部經費來源研究」,『中國經濟史研究』, 2019(2)
荊　瑤,「清代盛京地區商人群體研究」, 渤海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孫曉瑩,「康熙朝內務府商人と日本銅」,『東アシア文化環流』3(2), 2010.11
_____,「清代前期にあける人蔘採取制度と內務府商人」,『內陸アシア史研究』29, 2014.3
_____,「清代前期における內務府商人の研究」, 早稻田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6
松浦章,「山西商人范毓馝一族の系譜と事蹟」,『史泉』52, 1978
_____,「山西商人范氏經濟の資產狀況」,『清代海外貿易史の研究』, 朋友書店, 2002
_____,「清代對日貿易にあける官商·民商」,『清代海外貿易史の研究』, 朋友書店, 2002
王天馳,「康熙朝『黑圖檔』から見た盛京地方の內務府包衣」, 史學研究會, 2020.7
劉序楓,「清日貿易の洋銅商について—乾隆～咸豐期の官商·民商を中心に」,『九州大學東洋史論集』15, 1986
華　立,「清代洋銅官商范氏一族の軌跡」,『大阪經濟法科大學論集』100, 2011

부록

강희 4년(1665)-강희 39년(1700) 성경 內庫銀 수입 내역

(단위: 兩)

년도	항목	수입	총수입	총지출	잔액
강희 4년	점포 임대료	115.5000	115.5000	28.4360	5658.142058
강희 5년	점포 임대료	115.5000	1287.0210	10.5825	6934.580558
	면화 매각	1171.5210			
강희 6년	점포 임대료	115.5000	115.5000	20.7080	7029.372558
강희 7년	점포 임대료	115.5000	374.7000	82.4240	7321.648558
	소금 매각	259.2000			
강희 8년	점포 임대료(4칸)	44.0000	46.7000	133.4400	7234.908558
	무리마 혼토호의 위에게 징수한 은	2.7000			
강희 9년	점포 임대료(4칸)	44,0000	70.9000	2536.4190	4768.489558
	점포 임대료(13칸)	26.0000			
강희 11년	점포 임대료(17칸)	158.4000	2506.4000	76.4600	5994.851558
	면화 매각	1798.0000			
	息銀(13人)	450.0000			
	本銀(1人)	100.0000			
강희 13년	점포 임대료(17칸)	158.4000	823.6500	211.6000	6985.9500
	息銀(13人)	450.0000			
	쪽 매각	215.2500			
강희 14년	점포 임대료(4칸)	44.0000	716.2500	128.3250	7573.8750
	점포 임대료(8칸)	70.4000			
	점포 임대료(5칸)	16.0000			
	息銀(13人)	450.0000			
	쪽 매각	135.8500			
강희 16년	息銀(13人)	450.0000	667.3875	429.7350	8276.0225
	점포 임대료(4칸)	44.0000			
	점포 임대료(10칸)	88.0000			
	쪽 매각	56.7875			
	철폐 장원의 소 판매 수입	3.6000			
	wang cisai에게 징수한 은	25.0000			
강희 17년	息銀(13人)	450.0000	778.7750	190.5400	8864.2575
	점포 임대료(4칸)	20.0000			
	점포 임대료(13칸)	114.4000			
	쪽 매각	51.6250			
	잣 판매	142.7500			
강희 18년	息銀(13人)	450.0000	626.3500	42.4900	9449.1175
	점포 임대료(13	114.4000			

	칸)				
	쪽 매각	61.9500			
강희 19년	息銀(13人)	450.0000	658.1500	129.2900	9977.9775
	점포 임대료(13칸)	114.4000			
	몰수한 점포 임대료	30.0000			
	쪽 매각	63.7500			
강희 20년	息銀	450.0000	2834.9500	66.7450	12746.1825
	점포 임대료	189.2000			
	쪽 매각	63.7500			
	소금 매각	412.0000			
	면화 매각	1720.0000			
강희 21년	息銀	450.0000	696.5225	773.3260	12669.3790
	점포 임대료	189.2000			
	쪽 매각	57.3225			
강희 22년	息銀	450.0000	696.8250	62.0960	13304.1080
	점포 임대료	189.2000			
	쪽 매각	45.6250			
	벌은	12.0000			
강희 23년	息銀	495.0000	730.5210	1859.0580	12175.5710
	점포 임대료	189.2000			
	쪽 매각	46.3210			
강희 24년	息銀	990.0000	1229.7320	65.4700	13339.8330
	점포 임대료	189.2000			
	쪽 매각	50.5320			
강희 25년	息銀	990.0000	1300.7400	206.4300	14434.1430
	점포 임대료	189.2000			
	쪽 매각	106.5400			
	贖銀	15.0000			
강희 26년	息銀	990.0000	5869.3500	162.5170	20140.9760
	점포 임대료	242.6000			
	쪽 매각	114.1500			
	면화 매각	4522.4000			
강희 27년	息銀	990.0000	1384.4930	297.0250	21228.4440
	점포 임대료	270.2000			
	쪽 매각	124.2930			
강희 28년	息銀	990.0000	1401.0250	191.0500	22438.4190
	점포 임대료	308.0000			
	쪽 매각	103.0250			
강희 29년	息銀	990.0000	1317.5000	98.6500	23657.2690
	점포 임대료	308.0000			
	쪽 매각	19.5000			
강희 30년	息銀	990.0000	1429.9500	127.9300	24959.2890
	점포 임대료	308.0000			
	쪽 매각	131.9500			
강희 31년	息銀	990.0000	1423.6500	227.7550	26155.1840

	점포 임대료	308.0000			
	쪽 매각	125.6500			
강희 32년	息銀	990.0000	1416.6500	269.4800	27302.3540
	점포 임대료	301.0000			
	쪽 매각	125.6500			
강희 33년	息銀	990.0000	1677.0000	135.0800	28844.2740
	점포 임대료	319.0000			
	소금 매각	368.0000			
강희 34년	息銀	990.0000	3506.8000	148.6030	32202.4710
	점포 임대료	319.0000			
	면화 매각	2125.0000			
	쪽 매각	72.8000			
강희 36년	息銀	990.0000	1423.9250	168.3750	34526.5110
	점포 임대료	319.0000			
	쪽 매각	106.9250			
강희 37년	息銀	990.0000	1407.9250	146.3750	35788.0610
	점포 임대료	311.0000			
	쪽 매각	106.9250			
강희 38년	息銀	990.0000	1309.0000	154.5000	36942.5610
	점포 매각	319.0000			
강희 39년	息銀	990.0000	1381.8000	232.4500	38091.9110
	점포 임대료	319.0000			
	쪽 매각	72.8000			

- 『黑圖檔·京行檔』에 실린 강희 5년-강희 40년의 庫恩 수입·지출 내역 보고서에 근거하여 작성함.

Abstract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Qing Imperial Household Merchant System in Shengjing During the Kangxi Reign

Heo, Garam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social status and activities of the 'Qing imperial household merchants (*Nei-wu-fu* merchants)' by closely analyzing the document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merchant system and merchant management in Shengjing included in the *Hetu Dangse* archives. An 'imperial household merchant' refers to a person in charge of various commercial activities for the emperor's private treasury while exclusively belonging to the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 (Nei-wu-fu). While the Fan family's participation in state-run enterprises such as copper trade has been considerably studied as an exemplar, few studies have captured the overall image

of the entire Nei-wu-fu merchant group. With the increasing use of the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s archival materials, hundreds of Nei-wu-fu merchants were revealed to have existed in Shengjing (modern-day Shenyang) and Beijing during the Kangxi reign. Unlike the Fan family who originated from the prominent Sanxi merchants, these newly-discovered imperial household merchants were basically 'The Upper Three Banner Bondservants of the Nei-wu-fu', in other words, domestic workers of the emperor. Therefore, in order to capture the overall image and fully grasp the nature of the imperial household merchants, an understanding of the entire Nei-wu-fu personnel must be accompanied.

Despite the Qing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s relocation from its former capital Shengjing to Beijing in 1644, a fair number of Nei-wu-fu bondservants remained in Shengjing. Divided into groups, they engaged in either farming in imperial estates or orchards; gathering local specialties such as ginseng and sable pelts; or other miscellaneous affairs in need, all of which were obligatory according to their status as the bondservants of the emperor. *Alban* - corvée labor - was the very term referring to the labor service they provided on an annual basis. According to the need for management of these remaining affairs in Shengjing, the establishment of new posts of officials and Baitanggas (unranked clerks) along with the expansion of existing posts were proceeded in the early Kangxi years. Under such circumstances, a reques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imperial household merchant system had been brought up,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Nei-wu-fu merchants in Shengjing.

The Nei-wu-fu merchants, appointed in 1671 and 1684, were close relatives of the Department of the Privy Purse (*Nei-Ku*) officials or of stewards of imperial estates under the Nei-Ku

jurisdiction. They had been carrying out the corvée labor before nomination as Nei-wu-fu merchants; performing miscellaneous duties such as thread spinning, harvesting mushroom, Jew's ear and bracken, which meant they had little experience in mercantile activities. Upon nomination as the Nei-wu-fu merchants, they became responsible for the sales of products accumulated in the Nei-Ku. Annual payment of a certain percentage of the capital presented from the Nei-ku was also obligatory, which in turn was none other than the payment of their mercantile profits. By becoming the Nei-wu-fu merchant, the merchant himself and the additional two men attending him were exempted from the previous corvée labor.

The capital, which amounted from 100 to 300 tael that each Nei-wu-fu merchants received from the Nei-Ku, was different from a loan. Unlike the case of a loan where one would be required to pay off both the loan and the interest within a given period, Nei-wu-fu merchants were required to manage and invest their capital(in the form of silver) until they were discharged from their post. Payment arranged from the management of the capital provided from the Nei-ku was calculated separately from loan interests in their account books. That is to say, making profits just was another form of the corvée labor they had to perform in lieu of their previous corvée labor.

After being made a Nei-wu-fu merchant, one would not be allowed to quit despite being unable to administrate capital due to old age or bankruptcy until they found a successor. By principle, the post was to be succeeded through bloodline; however, those with no brothers or offspring could be succeeded by others who could take charge of it. This is similar to how the stewards of cotton and indigo estates were succeeded. Moreover, they were not permitted to

transfer to a different post or be promoted to an official. Therefore, we must understand Nei-wu-fu merchants as those '*carrying out mercantile activities as their corvée labor (Alban i hūdai niyalma)*.'

The cash balance of the Privy Purse in Shengjing acutely increa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ei-wu-fu merchant system. Payment from the Shengjing Nei-wu-fu merchants generally constituted 60% of the Nei-Ku's total annual income. To be able to make payments from their profit each year, Nei-wu-fu merchants participated in a variety of commercial activities. They would often enter into partnerships in groups of 2 or 3 and operate a business to generate profit. They not only operated business within Shengjing but also engaged in trade with Girin Ula and Joseon.

keywords :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Nei-wu-fu), Imperial Merchants, *Hetu Dangse* Archives, the Upper Three Banner Bondservants, Corvée Labor(Alban)
Student Number : 2018-21943